



2022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및 핵심성과지표 개발 연구

장인수 이소영·정희선·고제이·김세진







연구진

연구책임자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제 | 물 | 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위원회와 용역계약(2021. 11. 30.)한 「2022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및 핵심성과지표 개발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요약	····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3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5
제2장 영역별 정책 목표 검토 및 관련 인구 동태 고찰	11
제1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영역별 정책 목표 검토	13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주요 인구 동태 지표 분석······	19
제3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분석······	33
제1절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영역	36
제2절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영역	39
제3절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영역	43
제4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영역	47
제5절 소결	49
제4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 2022년 시행계획 예산 분류	57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분야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 검토	59
제2절 2021년, 2022년 시행계획 예산 분류 결과	65
제5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의 방향성······	73
제1절 개요	75
제2절 기존 핵심성과지표 검토	76
제2절 핵심성과지표의 원칙과 안	85
참고문헌	105

<표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3조⋯⋯⋯⋯⋯⋯⋯	···· 3
<표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3조(계속)	4
<표 1-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개요	5
<표 1−3> OECD 사회정책 분야 지원유형별 공공, 민간 의무 프로그램 분류·····	7
<표 1-4> 저출산/고령사회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1)	8
<표 1-5> 저출산/고령사회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2)	8
<표 3-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제출자료 검토 종합·····	50
<표 3-2> 예산 기준 신규사업(이전연도인 2021년 예산 규모 0, 2022년 예산 존재 사업)	51
<표 3-3> 2022년 시행계획 종료사업·····	52
<표 3-4> (참고) 2022년 시행계획 기준 예산 규모가 큰 사업	54
<표 4-1> OECD 사회정책 분야 지원유형별 공공, 민간 의무 프로그램 분류·····	60
<표 4-2> 저출산·고령사회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1안)·····	61
<표 4-3> 저출산·고령사회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2안)·····	61
<표 4-4> 저출산·고령사회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3안: 1+2안 절충안)······	63
<표 4-5> 추진분야별 2021년 시행계획 예산 규모	65
<표 4-6> 2021년 시행계획 분야별 3안 적용 결과	66
<표 4-7> 2021년 시행계획 분야별 3안 적용 결과: 범주별 지원방식 구분	66
<표 4-8> 2021년 시행계획 분야별 3안 적용 결과에 따른 영역별 주요 과제	67
<표 4-9> 2022년 시행계획 분야별 3안 적용 결과	68
<표 4-10> 2022년 시행계획 분야별 3안 적용 결과: 범주별 지원방식 구분	69
<표 4-11> 2022년 시행계획 분야별 3안 적용 결과에 따른 영역별 주요 과제	····70
<표 4-12> 2021년, 2022년 시행계획 범주별 예산 규모, 비중	71
〈표 5-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과제 및 핵심과제 성과지표······	77
<표 5-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 핵심과제의 성과지표 및 지표 평가 결과	78
<표 5-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사회 분야 핵심과제의 성과지표 및 지표 평가 결과	79
<표 5-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성장동력 분야 핵심과제의 성과지표 및 지표 평가 결과	79
<표 5-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	80
<표 5-6> 핵심성과지표(안)	83
<표 5-7> 핵심성과지표 및 국제비교 지표	83
<표 5-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 개선(안)······	84
<표 5-9>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 핵심성과지표(안)	85
<표 5-10> 4대 추진전략별 핵심성과지표(안)·····	88
<표 5—11> 3대 목표별 (종합)핵심성과지표(안)·····	88
<표 5—12>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영역의 핵심성과지표(안)	89
<표 5-13> 건강하고 능동적인 사회 구축 영역의 핵심성과지표(안)	93
<표 5—14>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영역의 핵심성과지표(안)	96
<표 5-15>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영역의 핵심성과지표(안)	99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

[그림 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체계도·····14
[그림 2-2]	출생아 수, 조출생률, 합계출산율의 추세와 변화율 추세(2011-2020년)20
[그림 2-3]	혼인건수와 조혼인율, 혼인건수의 변화율의 추세(2011-2020년)21
[그림 2-4]	고령인구비율, 65세 이상 인구 규모, 총 인구 규모의 추세와 변화율 추세(2011-2020년)23
[그림 2-5]	부양비의 추세 전망(2011-2040년)24
[그림 2-6]	65/75/85세 이상 인구비율의 추세(2011-2020년)25
[그림 2-7]	사망자 수, 조사망률의 추세와 변화율의 추세(2011-2020년)26
[그림 2-8]	총 인구 규모, 자연 증가율의 추세와 변화율의 추세(2011-2020년)27
[그림 2-9]	인구 감소 지역(사례 지역)의 5세 단위 순이동과 자연적 변화(2000-2020년)29
[그림 2-10	n] 시군구 단위 지역 인구 5년 단위 연평균 변화율 분포(2001-2020년)··································
[그림 4-1]	2021년, 2022년 시행계획 각 범주별 예산 비중 7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2022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검토 및 분석
 - 개별 세부사업의 내용, 성과목표(지표), 예산 규모, 구성 등 분석
 - 2021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과의 비교 분석: 세부사업 변동 특성
 - 시행계획 세부사업별 특성 분석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서면 자문 등
- □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정책 예산 분류 체계 실증 및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의개선안에따른2021년,2022년시행 계획 세부사업 예산 분류 체계 구축 및 분석
 - 예산 분류체계 개선안의 정합성 고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서면 자문 등
-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 설정
 - 전문가 자문 및 국내외 문헌 검토를 통한 핵심성과지표 개선대안 도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핵심성과지표 개선안 논의

2. 주요 연구결과

□ 시행계획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2년시행계획의심도있는검토는제4차각부처에서제출된 2022년 추진 예정사업에 대하여세부사업별유기적연속성, 과제명과과제목표의 정합성, 성과지표(목표)의적절성을검토하고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영역별세부과제를언급 하는 형식을취하고,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제시되고있는네개의추진전략별 로 구성
 - 첫번째로시행계획사업별내용검토는세부사업별유기적인연속성을검토하는측면에서 제출된 2022년 시행계획사업의 내용이 이전 연도인 2021년 해당사업의 향후 개선 및 보완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

- 두 번째로 과제명과 과제목표 간 정합성 검토는 과제명과 과제목표가 동일한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
- 세번째성과지표(목표)의적절성검토는성과지표와성과목표가과제명(과제목표)을적 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
- 추가적으로상기네개영역별로제시되고있는여러사업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기본 계획의취지를어떻게반영하고있는지를보다명확히전달하기위해필요한보완사항을과 제별로 제시

<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제출자료 검토 종합

보완점	개선 필요사항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추진기간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성과지표와 매년 시행계획에서의 추진(예정)사업의 내용 상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형식을 견지하여, 5년 단위의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매년 시행계획 추진 사업 계획이 이러한 5년 단위의 성과지표 와의 유기적 정합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
외생적 요인에 대한 지속 환류	-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추진 기간 내 범국가적 외생적 요인 (예컨대, 코로나 19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고려한 연도별 성과목표를 수정하는 등, (이전연도) 성과에 근거 한 이후 성과목표 수정, 보완과 같은 지속적인 환류 체계 의 적용 필요
이전 연도 사업의 한계점 보완 환류	- 이전 연도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향후 추진 계획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필요가 있는 바, 이러한 점에서 다소 부족 함,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 추진 단계에서 지속 수정 보완된 성과지표(보조지표)의 반영 필요
연도별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정보 제시	 어떠한 근거를 통해 연도별 성과목표를 도출하고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보완될 필요, 더 나아가 연도별 성과목표 산출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 경우에도근 거의 논리 구조가 빈약한 특성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
주관부처가 다른 동일한 과제명이 반복되고 있는 과제 구분	- 과제번호 내지는 부제를 포함한 과제명을 통해 구분하여 구성할 필요
성과지표가 없는 세부과제나 성과지표 해당없음 과제 관련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성과지표및 연도별보완 성과지표의 구성이필 수적으로 구성될 필요

자료: 부처별 제줄자료를 검토하여 저자 작성.

○ 저출산사업으로서의부합도가낮다는논의(김우림,2021)와관련하여,돌봄노동분야는저 출산고령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져야하는사회정책적 이슈임은분명함, 다만, '돌봄' 에 대한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돌봄노동분야 좋사자 권리보호나 좋사자 처우개선에 있어서 돌봄 좋사자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걸맞게 사업대상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보완,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청년창업지원정책과관련하여,청년창업과관련한지원정책이라는사업이지만실제로는일 반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거나 게임개발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등,실제'청 년창업지원'과는관련성이 없어보이는 일반창업지원사업이 일부포함되어 있음. 저출산대 책의 일환으로 청년스타트업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저출산대책이라는 계획으로 사회적 지지와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대상에 대한 고민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예산 분류

- 저출산 및 고령사회 각각의 분야별로 대표적인 영역이자 국제비교 추진이 불가피한 "가족 (family)"과 "노인(노령, old)"영역만 OECD SOCX를 준용하고, 그 이외의 사업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본적으로 준용한 우리나라 정책 분야로 정책 영역을 구분한 2안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절충안을 구성함.
- 우리나라정책 영역은 공통적으로 보건/주거/고용/교육/기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저출산은 가족, 고령사회는 노인 영역을 각각 설정할 수 있음. 이는 2안의 정책 영역을 보다 일반화시킨 특징으로 이해됨.
- 상기 절충안에서의 "가족", "노인"은 OECD SOCX의 가족과 노인 범주와 제4차 기본계획 내 "가족관련", "노인 관련" 사업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됨. 이에 일치하지 않는사업의 경우기타범주에포함됨. 즉, 영역의가족(OECD), 노인(OECD) 범주는제4차기본계획(시행계획) 내 사업 중 OECD SOCX의 가족, 노인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만을 구분한 것이므로, 국제비교 시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한 특징이 있음.

< 丑> 7	저출산·고령사회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3안:	1+2안	절충안)
--------	----------	-------	----	---------	------	------

정책 영역	지원방식	직접/간접
가족(OECD)	현금	기 과
노인(OECD)	현물, 서비스	직접
	현금	직접
보건	현물, 서비스	식십
	그외	간접
	현금	직접
주거	현물, 서비스	
	그외	간접
	현금	 직접
고용	현물, 서비스	- H
	그외	간접
	현금	직접
교육	현물, 서비스	
	그외	간접
	현금	직접
기타	현물, 서비스	निध
	그외	간접
기타(가족)	그외	간접
기타(노인)	그외	간접

주:1) 가족(OECD), 노인(OECD)는 각각OECD SOCX의 가족과 노인 범주와 제4차기본계획 내 "가족 관련", "노인 관련" 사업이 일 치하는 경우를 포함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OECD)", "노인(OECD)"은 각각 OECD SOCX 정책 영역 범주를 준용¹¹한 것이며, 그 이외의 영역은 2021년 시행계획 정책 영역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책 영역을 구분한 것임(대체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세부사업은 상기구분된 정책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됨). 가족/노인 정책영역임에도 불구하고 OECD SOCX의 가족, 노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가족, 노인의 별도 범주로 구성함. 이는 OECD SOCX는 비예산을 제외하며, 현금(cash)와 현물(in kind)로 구분하고 있는 특징에기인함.
- "기타" 범주는 각분야별 해당 범주(가족(OECD)/노인(OECD), 가족/노인, 보건, 주거, 고용, 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세부사업들을 구분하기 위한 범주임.
- 현금, 현물, 서비스(직접)은 상기 형태로수혜자가 직접적으로수혜하는 경우이며, 그이외 의경우는 간접임. 이러한 직접 지원 방식은 OECD SOCX의 구분과 대체적으로 일치함.
- 또한, 정책영역과 지원방식에 따른 구분은 완전히 배타적이기 때문에, 특정개별 사업은 두 개 이상의 범주에 동시에 분류될 수 없으며, 오직 한 개의 범주에만 포함됨.
- 지금까지의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명확한 예산분류 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하여(2022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및 핵심성과지표개발연구에서 수

²⁾ 기타(가족), 기타(노인)은 각각 OECD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가족, 노인 예산의 성격을 띠는 범주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¹⁾ 이는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이 공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신규과제의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OECD 공공 사회복지지출 분류 체계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분류할 필요가 있음.

행될 2022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 내예산분류제시를 위하여), 2021년시행계획분 야/영역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상기 개선안(3)을 적용해 보았음.

○ 2022년시행계획의분야별예산분류결과,가족(OECD family),노인(OECD old) 범주의 예산이 각각 24.38%, 25.39%이며, 2021년 결과와 유사하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주는 주거 범주(30.04%)로 나타남.

<표> 2022년 시행계획 분야별 3안 적용 결과

(단위: 백만 원, %)

구분	가족 (OECD family)	노인 (OECD old)	보건	주거	고용	교육	기타	기타 (가족)	기타 (노인)	합계
예산	19,244,404	20,039,201	685,214	23,708,710	8,302,879	3,875,897	1,468,691	495,409	1,114,394	78,934,798
비중	24.38	25.39	0.87	30.04	10.52	4.91	1.86	0.63	1.41	100.00

- 주:1) 가족(OECD), 노인(OECD)는 각각OECD SOCX의 가족과 노인 범주와 제4차기본계획 내 "가족 관련", "노인 관련" 사업이 일 치하는 경우를 포함함.
- 2) 기타(가족), 기타(노인)은 각각 OECD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가족, 노인 예산의 성격을 띠는 범주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2022년 시행계획의 분야별 예산을 범주 및 지원방식으로 분류한 결과, 대체적으로 주거, 교육, 기타 모두 간접 지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고용의 경우 직접 예산이 약 6.03조 원, 간접 예산이 2.28조 원으로 직접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022년 시행계획 분야별 3안 적용 결과: 범주별 지원방식 구분

(단위: 백만 원, %)

정책 영역	지원방식 구분	예산	비중
가족(OECD family)	직접	19,244,404	24.38
노인(OECD old)	직접	20,039,201	25.39
 보건	직접	401,798	0.51
포신	간접	283,416	0.36
	직접	10,803,919	13.69
주거	간접	12,904,791	16.35
고용	직접	6,027,560	7.64
T.9	간접	2,275,319	2.88
70	직접	1,169,375	1.48
교육	간접	2,706,522	3.43
 기타	직접	215,599	0.27
기다	간접	1,253,092	1.59
기타(가족)	간접	495,409	0.63
기타(노인)	간접	1,114,394	1.41
합계	-	78,934,798	100.00

주: 1) 가족(OECD), 노인(OECD)는 각각OECD SOCX의 가족과 노인 범주와 제4차 기본계획 내 "가족 관련", "노인 관련" 사업이 일 치하는 경우를 포함함.

²⁾ 기타(가족), 기타(노인)은 각각 OECD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가족, 노인 예산의 성격을 띠는 범주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3안 적용 결과에 따른 영역별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이 2021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특히,가족(OECDfamily)범주는3-1-가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국공립등 공보육확충,국공립어린이집책무성 강화,안정적서비스제공-영유아보육료,민간기관투명성 제고), 4-1-나 아동수당 제도개편 검토 과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할 수 있음. 노인 (OECDold)범주는1-1-가저소득노인에대한소득보장강화(기초연금제도)가주요과제인 것으로 나타남.

<표> 2022년 시행계획 분야별 3안 적용 결과에 따른 영역별 주요 과제

저출산분야	과제명
가족 (OECD family)	3-1-가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국공립 등 공보육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책무성 강화, 안정적 서비 스 제공-영유아보육료, 민간기관 투명성 제고) 4-1-나 아동수당 제도개편 검토
노인 (OECD old)	1-1-가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기초연금제도)
보건	2-3-가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강화 3-3-나 청년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건강보장 3-4-나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주거	4-1-가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고령자 매입임대 공급) 4-1-나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확대 4-1-라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4-1-라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고용	1-1-나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중소기업 지원금 확대) 1-1-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년기 소득 보장 3-1-나 청년 고용지원 및 적합일자리 발굴(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일자리 발굴) 3-2-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및 확대를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3-2-다 지역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교육	1-2-다 미래형 교육에 부합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혁신 2-2-라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디지털 역량수준 향상·격차 해소(디지털 격차 해소) 2-3-나원하는 시기에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유급휴가 훈련 지원, 일학습 순환제) 4-1-다 가구별 아동지원 강화(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타	3-3-가.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4-1-가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지역대학 역할 강화) 4-3-나 선별적 지원 강화 4-3-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
기타(가족)	3-1-나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유치원: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성 제고, 저소득층 지원, 서비스 질 제고)
기타(노인)	3-1-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주:1) 가족(OECD), 노인(OECD)는 각각 OECD SOCX의 가족과 노인 범주와 제4차 기본계획 내 "가족 관련", "노인 관련" 사업이 일 치하는 경우를 포함함.

²⁾ 기타(가족), 기타(노인)은 각각 OECD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가족, 노인 예산의 성격을 띠는 범주를 의미함. 자료: 부처별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3안 적용 결과에 따른 2021년. 2022년 각 분야별 범주에 대한 예산 비중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는주거,가족(OECD family)의 경우2021년에 비하여2022년모두 예산규모가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전체분야 예산에서 차지하는비중은 다소 감소한것으로 나타남. 주거 영역의 경우2021년의 31.95%에 비하여2022년에는 30.04%로 다소 감소한것으로 나타났으며,가족(OECD family) 영역역시2021년24.75%에서24.38%로 감소하였음.
- 고용 영역은 2021년에 비하여 2022년 예산 규모도 감소하였으며, 예산 비중도 감소한 반면, 교육 영역은 예산 규모, 비중이 모두 2022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 기타 영역역시 예산 규모, 예산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OECD old) 영역의 경우 2021년에 비하여 약1.13조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은 0.6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기타(가족)과기타(노인)의예산규모는모두증가한반면,비중은기타(가족)이증가하고, 기타(노인)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021년, 2022년 시행계획 범주별 예산 규모, 비중

(단위: 백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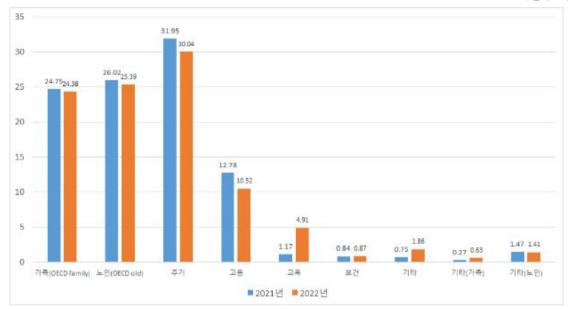
			(ਦਸ: ਜਦ ਦ, 70)	
구분	2021년		202	22년
계	72,679,857	100.00	78,934,798	100.00
가족(OECD family)	17,987,427	24.75	19,244,404	24.38
노인(OECD old)	18,909,534	26.02	20,039,201	25.39
주거	23,219,681	31.95	23,708,710	30.04
고용	9,287,238	12.78	8,302,879	10.52
교육	853,283	1.17	3,875,897	4.91
보건	608,080	0.84	685,214	0.87
기타	545,114	0.75	1,468,691	1.86
기타(가족)	199,827	0.27	495,409	0.63
기타(노인)	1,069,673	1.47	1,114,394	1.41

주:1) 가족(OECD), 노인(OECD)는 각각OECD SOCX의 가족과 노인 범주와 제4차기본계획 내 "가족 관련", "노인 관련" 사업이 일 치하는 경우를 포함함.

²⁾ 기타(가족), 기타(노인)은 각각 OECD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가족, 노인 예산의 성격을 띠는 범주를 의미함. 자료: 부처별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021년, 2022년 시행계획 각 범주별 예산 비중





- 주:1) 가족(OECD), 노인(OECD)는 각각OECD SOCX의 가족과 노인 범주와 제4차 기본계획 내 "가족 관련", "노인 관련" 사업이 일 치하는 경우를 포함함.
- 2) 기타(가족), 기타(노인)은 각각 OECD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가족, 노인 예산의 성격을 띠는 범주를 의미함. 자료: 부처별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핵심성과지표

가. 핵심성과지표(안) 발굴 경과

- 이전 기본계획의 핵심성과지표, 대안으로 제시된 핵심성과지표 등 검토
 - 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핵심성과지표(저출산분야18개,고령사회분야17개,성장동력분야10개로총45개지표),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각분야 별핵심과제,핵심과제의 성과지표,핵심성과지표에 대한평가 결과,제2차 저출산·고 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성과지표(총 13개 지표)
- 국제비교가능한성과지표,향후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활용될필요가있는지 표에 대한 선행연구 사례 검토
 - OECD(2020),이삼식외(2014)와강은나외(2015)에서제시된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핵심성과지표중국제비교가가능한지표,김은정외(2018)에서제시된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핵심성과지표에대한대안지표,장인수외(2021)의연구에서제시된제4차저출산고령사외기본계획에서지속적으로추적,관리하여야할필요성이 있는 향후 핵심성과지표 검토

- 핵심성과지표(안)전문가 의견수렴(내부 연구진 및 내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지표개발에 대한 정합성, 출산율 대체지표, 노후생활보장 관련, 청년기 지원 관련 지표에 대한 외부 전문가 심층 자문
 - 연구진및내부전문가와 적절성, 명확성, 측정가능성, 효율성을 중심으로 각 4개세부전략별 잠정 도출된 핵심성과지표(안) 및 추가 보완, 개선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 4차에 거쳐 논의
- 기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활용 가능한 지표 검토
 - 국가지표체계(가치지향적지표:국가발전지표총93개,국민삶의질지표총71개)²⁾,e-나라지표(국정모니터링지표총743개)³⁾,균형발전지표(핵심지표총2개,객관지표총41개, 주관지표 총 28개)⁴⁾ 검토

나. 핵심성과지표(안)

- 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비전과목표,4대추진전략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 절성·명확성·측정 가능성·효율성 등을 감안, 38개 지표(안)을 마련
- 다만, 하기성과지표는4대추진전략을 중심으로구성한성과지표로써보다큰범위를아우르는 중영역 이상의 지표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이에,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3대 목표중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 정한 사회'에 대한 종합지표를 추가적으로 제시함.

<표> 4대 추진전략별 핵심성과지표(안)

 구분	핵심성과지표(안)
	- 부 또는 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 성별고용률
	- 시간당 임금 성별격차, 상용근로자 성별 비율
크게 이러그	- 공보육(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이용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함께 글포 트 사회	- 아동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행복도)
7121	- 아동빈곤율
	- 출산 결정의 주도성(출산 여부. 출산 시기, 자녀수)
	- 중고등학생 연간 성교육 참여(경험)률
	- 건강한 출산 비율
	- 노인빈곤율
건강하고 능동적인 사회 구축	- 건강수명
	- 장기요양인정자 중 재가서비스 이용률
	- 주택에서 발생한 고령자 안전사고율
	- 고령자 보행교통사고 사망률

²⁾ 국가지표체계(K indicator). http://www.index.go.kr/unify/main.do?pop=%27y%27에서 2022.3.1. 인출)

³⁾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main.do?cate=1에서 2022.3.1. 인출)

⁴⁾ NABIS 내 균형발전지표(https://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에서 2022.3.1. 인출)

	- 고령자 보행교통사고 부상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률
	- 혁신인재 사업 예산 규모
	- 평생학습 참여율
	- 평생학습 참여시간
ㅁ트이 어라이	- 청년빈곤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 경력단절여성비율(기혼여성대비/비취업여성대비),경제활동참가율,성별비정규직사회보험(국민연
고두 필위되는 사회	금,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
	- 신중년 재취업비율
	- 대기업(1,000인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비율
	- 신중년의 지속적 여가활동 비율
	- 신중년의 여가생활 만족도
	- 한부모가족의 차별 경험률
	- 다문화가족의 차별 경험률
	- 노인층과 젊은층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이고고 - 미취에	- 공공사회복지지출(GDP 대비)
인 구구 조 변화에 대한 적응	- 국민연금 수급률
내한 작공	- 국가균형발전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 건강보험 재정수지율

자료: 저자 작성.

<표> 3대 목표별 (종합)핵심성과지표(안)

영역	핵심성과지표(안)
개인 삶의 질 향상	-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 국가성평등지수
 인구변화대응 사회혁신	- 공공사회복지지출(GDP 대비)

자료: 저자 작성.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 정부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년)및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년),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에이어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년)을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추진 중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및시행령제3조에따라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내에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표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4.>
 - ⑤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2. 6. 15.] 제21조

<표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3조(계속)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2., 2010. 3. 15.>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자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제18580호 (202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70호 (2021)

- 다만, 정책의실효성과관련하여시행계획 내세부사업 내용과예산, 핵심성과지표개선대 안에 대한보다심도 있는 논의와분석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시행계획 내세부사업이 저출 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서 가지는의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본연의의도에 부합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함.
 - 다각적으로추진되어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관련하여,지속쟁점사항으로제기 되고 있는 점은 정책의 실효성임.
 - 특히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저출산 분야에서 더욱 부각되는 특징을 띠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방대한 저출산 분야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바로 그것임.
- 이에저출산,고령사회대응정책으로서의본연의성격에더욱부합하는2022년중앙부처와 지자체시행계획을 수립하기위하여, 현재수립, 추진되고 있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2021년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실효성과 맞물려지속적으로제기되어 온분야별 예산규모 및 구성과 관련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OECD SOCX 범주 및 수혜자를 기준으로 하는 직, 간접 예산분류 체계(안)을실질적으로 적용하여분야별 정책유형 및 범주에 따른 예산 규모를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이후 지속적인 관리 및 추적 체계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에서제시되어온핵심성과지표와 관련하여,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2년이후시행계획)의핵심적성과를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활용할수 있는 핵심성과지표 개선 안을 구축,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상기논의를 바탕으로 본연구는보다 내실 있는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내 세부사업 내용, 예산 구성 및 규모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보다합리적인 분야별 예산 분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제시되어 있는 분야별 예산분류 체계 구축 개선 대안을 2021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내 세부사업, OECD SOCX 체계에 실증적으로 적용하며, 정책성과와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활용할수있는 핵심성과지표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히, 본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최우선적으로 견지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1. 연구내용

- □ 2022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내용 분석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2022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검토 및 심층 분석
 - 개별세부사업별추진내용,성과지표,성과목표등이기본계획의취지에부합하고있는 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및 분석: 기본계획취지와사업별추진 내용 간연관성 판단기 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몇 가지 유형을 분류하는 방안 등 고려
 - 2021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과비교하여새롭게편성된사업 및확대사업에 대한 검토 및 분석

<표 1-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개요

추진분야	과제 수(비율, %)	2021년 예산 규모(조 원)(비율,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129(36.2)	36.6(50.3)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60(16.9)	23.5(32.4)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99(27.8)	9.7(13.3)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68(19.1)	2.9(4.0)
합계	356(100.0)	72.7(100)

자료: 대한민국정부(2021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p. 10.

-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의세부사업군별정책성과,성과지표(목표)등을검토하기위한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통계 및 지표 분석
 - 출산,사망, 이동과 관련된 주요 인구 변동 지표의 전국가적 측면 및 지역 측면 검토 및 해석
- 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방향성을고려한개별사업의보완사항및향후시행계획 구성, 성과평가 관련 개선 방향 도출
- □ 2022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예산 분석 및 분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에서제시하고있는분야별예산분류체계개선안을2021년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실증적으로적용하고이를바탕으로2022년시행계획예산을 정책 유형 및 범주별로 분류하고, 예산 현황(규모 및 구조)을 분석
 - 본개선안은 OECD SOCX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 영역 및 각각의 세부 영역별 현금(현물 포함), 서비스와 같은 지원방식으로 단계적인 구분을 통해, 분야 및 영역별 예산 규모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견지하고 있음. 또한, OECD SOCX 정책 영역을 준용하여, 국제 비교도 용이한 특징이 있음.
 - 또한, 본개선안은 각분야별 예산은 정책 영역과 지원 방식 구분에 따른 직접, 간접 특성이 엄밀하게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표 1-3> OECD 사회정책 분야 지원유형별 공공, 민간 의무 프로그램 분류

노인	가족
현금 급여 연금 조기퇴직연금 기타 현금 급여	현금 급여 가족수당(양육수당) 출산 및 육아휴직 기타 현금 급여
현물 급여 거주 돌봄/재가 서비스 기타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조기 아동 교육 및 보육(ECEC) 재가 서비스 등
유족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현금 급여 연금 기타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장례비용 기타 현물 급여	공공고용 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s:PES) 관리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 보호, 지원 고용 및 자활 창업 지원 스타트업 인센티브
무능력 관련 급여	실업
현금 급여 장애연금 산재연금 산재유급휴가 기타 유급휴가	현금 급여 실업수당/퇴직금 해고(조기퇴직) 관련 급여 현물 급여
기타 현금 급여	주거
현물 급여 거주 돌봄/재가 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현물 급여 주거 지원 기타 현물 급여.
보건	기타 사회정책
현물 급여	현금 급여 소득 유지(소득 보전) 기타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사회 부조 기타 현물 급여

자료: OECD(2019). The OECD SOCX Manual 2019 Edition. A guide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https://www.oecd.org/social/soc/SOCX_Manuel_2019.pdf, p. 16에서 2021.10.1.에 인출한 자료를 번역하여 제시함.

<표 1-4> 저출산/고령사회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1)

저출산 분야	고령사회 분야 지원방식		 직접/간접
정책	영역		11, 21
		현금	직접
보건	노인	서비스	7 8
		그외	간접
		현금	직접
가족	보건	서비스	行伯
		그외	간접
	주거	현금	직접
적극적노동시장 프로그램		서비스	行由
		그외	간접
		현금	직접
실업	기타 사회영역	서비스	行由
		그외	간접
		현금	직접
주거		서비스	一角
		그외	간접

주: 1) OECD SOCX 정책 영역 범주를 준용한 것임.

자료: 장인수 외(2021).

<표 1-5> 저출산/고령사회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2)

저출산 분야	고령사회 분야	=1011.1	TITI (=1T)
정책 영역 1		지원방식	직접/간접
		현금	직접
근로환경(여건)	소득보장	서비스	44
		그외	간접
		현금	직접
보육/돌봄	보건	서비스	719
		그외	간접
		현금	직접
출산/양육/보건	돌봄	서비스	
		그외	간접
		현금	직접
	주거	서비스	
		그외	간접
		현금	직접
	기타 사회정책	서비스	
		그외	간접
정책	영역 2	지원방식	직접/간접
		현금	직접 - 직접
청소년	노인	서비스	
		그외	간접
	신중년	현금	직접
청년		서비스	
		그외	간접
		현금	직접 - 직접
여성		서비스	
		그외	간접

주: 1) 정책 영역 1은 2021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분야 정책 영역 세부 범주를, 정책 영역 2는 2021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내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분야 정 책 영역 세부 범주를 각각 준용한 것임. 2) 세제 지원은 현금 지원으로 구분함.

자료: 장인수 외(2021).

²⁾ 세제 지원은 현금 지원으로 구분함.

³⁾ 정책 영역 2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출산, 고령사회 분야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현금, 서비스가 아닌 그 외의 간접 지원일 것으로 이해됨.

- 상기 개선안을 적용한 2021년, 2022년 시행계획 분야별 예산 분류 체계와 기존 분야별 예산 분류 체계의 비교 분석
- 상기 개선안을 적용한 2021년, 2022년 시행계획 분야별 예산 분류 체계에 따라 중앙부처 시행계획 세부사업 성격과 정책 범위에 대한 논의, 분석
-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 설정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연도별시행계획의 핵심적 성과를 심도 있게 점검, 추적, 관리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 발굴 및 제시
 - 제4차기본계획을중심으로우리나라의저출산·고령사회의현재모습을모니터링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 발굴 및 제시

2. 연구방법

- □ 2022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검토 및 분석
 - 개별 세부사업의 내용, 성과목표(지표), 예산 규모, 구성 등 분석
 - 2021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과의 비교 분석: 세부사업 변동 특성
 - 시행계획 세부사업별 특성 분석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서면 자문 등
- □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정책 예산 분류 체계 실증 및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의개선안에따른2021년,2022년시행 계획 세부사업 예산 분류 체계 구축 및 분석
 - 예산 분류체계 개선안의 정합성 고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서면 자문 등
-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 설정
 - 전문가 자문 및 국내외 문헌 검토를 통한 핵심성과지표 개선대안 도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핵심성과지표 개선안 논의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견지한 2022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의 내실 있는 수립

나. 활용방안

- 향후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시기초자료로서활용및저출산·고령사 회정책에 반영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예산 분류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 등에 이용



제 2장

영역별 정책 목표 검토 및 관련 인구 동태 고찰

제1절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영역별 정책 목표검토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주요 인구 동태 지표 분석

제 2 장 영역별정책목표검토 및 관련 인구 동태 고찰

제1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영역별 정책 목표 검토

- 1. 제4차 기본계획 정책 추진 방향 영역별 검토
- □ 초저출산이지속되고,총인구규모감소,고령인구증가 및생산연령인구감소,지역별인구격차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추진되어 왔음.
- □ 다만,이러한범정부적노력에도불구하고초저출산현상과고령화는지속적으로심화되어초고령사회진입을예상하고 있음. 또한총인구감소 및 인구의지역적 불균형심화추세는당초예상한 것보다빠르게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위하여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함(대한민국정부, 2021a, p. 8).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사회', '인구변화대응사회 혁신'의 목표를 제시함(대한민국정부, 2021a, p. 43).
- □ 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기존에가지고있던관점을전환하고자노력함.제4차기 본계획에서는개인의 삶의 질제고에 초점을 두었으며, 가족에 대한 지원 및 투자와사회구조 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음(대한민국정부, 2021a, p.40).
 - 그동안기본계획의국가발전전략은개인의노동력과생산력이라는관점을가지고추진되었다면, 이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관점으로 전략을 전환하고자 함.
 -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개개인들이생애주기별삶의경로를순조롭고유연하게이행할 수있도록 사회적환경을조성하고, 개별화된삶의권리를 보장받을 수있는 사회를 구현 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아이를키우는 부모의육아부담을완화하기 위하여가족지원투자를 확대하고, 미래를준비하는청년층을 위하여 일자리·주거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육아에 대한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 노동시장과 교육시스템에 대한 개혁, 노동시장에 서의성평등 구현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정책적 지원 강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그림 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체계도



자료: 대한민국 정부(2021a), p. 43

- □ 또한,아동의기본권을보장하고일·생활균형,함께돌보는사회로전환하는데초점을두었으며,노후의기본생활을보장하고고령자가능동적으로역할을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하였음 (대한민국정부, 2021a, p.41).
 - 청년층 남녀모두의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적 여건

- 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자 하였음.
-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권리임을 강조하였으며, 일과 생활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하여 일터에서는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관행적인 성차별을 해소하고자 하였음.
- 또한아동의기본권을 보장하기위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요자중심의 질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하였음.
- 더 나아가 포괄적인 성·재생산권을 보장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고령자 개인의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고령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먼저,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 개인의 자산의 안정적 소득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안정적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였음.
 - 고령자의건강권을보장하기위하여예방이고사전적차원의보건·의료서비스를확충하고예방-조기발견-치료·관리-돌봄내실화를통한치매국가책임제를완성하고자하였으며, 재가 기반 건강 및 돌봄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하였음.
 - 고령자가 안전하고편안하게 이용할수 있는 주거·교통여건을 조성하고 고령 친화커뮤니티를 확산하고자 하였으며, 존엄함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생애에 걸친 삶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하고자 하였음.
- □ 아울러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위하여교육과훈련을활성화하고삶의기반을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가족, 사회통합, 지역상생기반구축 등을통해국가와사회의 대응력제고를 강조하였음(대한민국정부, 2021a, p. 42).
 - 학령인구감소, 청년의 생애이벤트포기, 여성과신중년의 경제활동참여를지원하기 위하여, 모두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삶의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술혁신이빠르게변화하는데대응하기위하여교육환경과교육과정에서미래형교육체계를기반하고자하였으며,학생과교원의역량을강화하고자하였음. 또한변화하는사회에서성인들의대응능력을제고하기위하여평생교육과직업훈련을활성화하고이를 통하여인적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청년에게는자립-결혼-출산의이행기에서포기하지않도록하기위한주거안정지원및

일자리진입을 위한지원등을 통해 삶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여성과 신중년에 게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지원하고, 다양한 노동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인구구조 변화의 뉴노멀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연령 통합, 다양한 노동 포용, 지역 통합, 고령친화경제도약 등을 제시하였음.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률혼 중심의 정상 가족에 대한 관점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들이 차별 없이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 받침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연령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하여 연령으로 인한 장벽을 없애고 모든 연령대가 통합할수 있도록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며, 다양한 노동을 포용하고개인단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전국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수도권과밀로인하여경쟁심화, 저출산등으로이어지고있는 현상을 방지하기위한지
 역 상생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 통합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마지막으로스마트돌봄체계를강화하고고령친화기업을육성하며,사회시스템수급조 정을 통한 고령친화경제로 도약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음.
- □ 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전체적인기조는 인구구조변화에기반한사회적적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삶의 방식에서 시대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일련의 합의에 기인하고 있음(박종서 외, 2020).
 - 저출산분야는 현재의 초저출산현상이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사회구조적에서 오는 제약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고용 및 주거에 대한 불안해소, 노동 시장과 가족 내 갈등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됨.
 - 고령사회분야에서는지금까지의기본계획이소득,고용,돌봄,건강,문화여가및사회참여 등다양한분야에 대한 정책들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 거시적 측면에서의 높지 않은 정책 효과성을 노정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측면에서 영역별추진 정책간의 연계성과 통합성, 효과성을 목표로 각분야에서 국민적 공감대와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됨.
 - 이외에도,지금까지의기본계획에서는부분적으로만고려되어온지역간인구분포와인구 이동 및 관련 정책 과제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한 세부 사업을 구성하고 있음.

2. 제4차 기본계획 정책체계도 내 세부영역 및 추진전략 검토 및 개선 방향

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 '함께일하고함께돌보는사회조성'영역내세부과제는저출산 현상의산업구조과노동시장 의변화, 교육의 대중화와같은 거시적환경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노동시장참여, 가족형성, 삶의가치관변화를거쳐, 저출산으로이행되는모든 과정에서의나타나고있는문제점을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박종서 외, 2020).
 - 이에 일과 육아의 병행, 성평등한 일터 조성,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아동의 안정적 발달 지원, 성·재생산권 보장 등 생애전반의 이행기 단계에서 욕구가 높은 과제에 대한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음.
- □ 다만,이러한 정책들이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에 부합하는지는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성평등 노동시장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가족 다양성에 대한주요 과제에서도 결혼을 중심보다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가치관 변화 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의 문제가 국가적 관점으로만 제시되고 있는 반면, 개인적 관점에서의생애전망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나.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 '건강하고 능동적인고령사회구축' 영역내세부과제는고령자의독립성보장,고령자의사회 적참여와자립성보장,고령자의권리로서의삶의질보장,연령통합,사회연대와같은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짐(박종서 외, 2020).
 - 노후준비, 활동적인노후를위하여건강과돌봄, 고용과소득, 고령친화환경과노후준비문 화조성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과제가 제시되었음.
- □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즉, 노후소 등보장에 대해서는 이전의 기본계획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임(국민일보, 2020. 12. 3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20. 12. 17.).
 - 제시되고있는 노후소득보장에 대한논의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 주목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안정성이 취약한 노동자 등에 대한 고려가 더욱 요구됨. 국민연금역할 재정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관련 논의가부족함을 지적함(참여 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20, 12, 17.)

다.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 '모두의 역량이 고루발휘되는 사회'내세부과제는 학령인구감소, 교원수급 규모, 4차산업혁명등의 급격한사회변화, 베이비붐세대 대거은퇴, 성공적 노화의 중요성등이 대두되고 있는 배경을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과제가 제시되고 있음(인구정책연구실, 2020)5).
 - 보다구체적으로, 교육의 공적 강화 및 격차 완화, 평생교육 및 직업훈령 강화, 청년의 삶의 질을 고려한 안정적 일자리, 주거,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마련, 여성과 신중년의 경력단절 및 주된 일자리에 대한 과제가 제시되었음.
- □ 특히 및직업훈련에 대한정책에 대해서는 급격한인구 감소, 디지털전환, 그린전환이라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바(정재호, 송창용, 남재욱, 정지운, 2021). 관련 세부 과제들이 상기 논의와의 정합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대학내 평생계속교육과정을 도입하고,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방대학이 핵심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노동시장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개인주도형식의교육훈련이강화되어야하며,노동 시장과교육훈련정책의연계가고도화되고,미래사회의역량을확대하기위한'보편학습소 득'의 도입이 더욱 부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신기술인력수급과관련해서는신기술분야의정의와범위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이를 바탕으로 한 대체수요 파악 및 인력수급 전망 등을 인력양성정책이 더욱 요구됨.

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 상기영역에 대한세부과제로가족, 연령, 사회안전망, 지역상생, 고령친화경제를추진하기위한 과제가 제시되었음.
 - 지역간격차·불균형 해소, 정주여성의 개선 등에 대한 정책으로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고 용및 일자리 정책, 돌봄, 주거, 보건의료, 교육 등으로 영역별 세부과제가 제시되었음.
- □ 특히,지역상생발전을위해서는중앙과지방자치분권이라는관계에서동반자적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임(박종서 외, 2021).
 - 이에거버넌스체계에 대한정비가필요한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관련이 있는각 각의중앙부처와지방정부와의소통을통해시행계획수립과집행, 성과평가등에서 협력적 관계가유지되어야 할 것임(박종서, 2022).

⁵⁾ 박종서, 김성기, 김왕준, 김철희, 박천규, 신윤정, ... 오신휘. (2020),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전망과 정책적 함의. 세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주요 인구 동태 지표 분석

1. 서론

- 본절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우리나라의 주요 인구 변동의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인구 변동 특성 관측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함.
- 본연구에서의인구변동관측은단순히인구변동의추세를살펴보는것이아니라,인구변 동의 양상과 정책 추진, 또는 정책 환경 변화 등의 외생적 요인 간 연관성에 대한 보다 심층 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타진해 보기 위한 목적에 기인하고 있음.
- 또한인구변동 관련집계변인의 지속적인 추적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정책 추진과 맞물린 인구 동태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및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함임.
- 본절에서관측하고자하는인구변동을보다구체적으로설정하기위하여,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참조하였으며,저출산,인구의고령화를중심으로,출산,육아,노후,인구구조,인구 규모 등과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논의를 구성하고자 함.

2.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주요 인구 동태 관측 결과와 의미

- 먼저,저출산과관련하여우리나라의출생아수,합계출산율,조출생률은최근10년간지속 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세 변인 간 추세는 유사한 특성이 나타남.
- 특히상기변인은 공통적으로 2015년 이후 그감소폭이 커지고 있음. 2011 2020년간세 변인의 연평균 변화율은 2015 2017년간 크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소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관측됨.
- 다만이러한변화율은 음의 변화율이 증가한 것으로서, 변인이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변인 감소폭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변인감소폭의 완화 양상이 어떠한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 즉, 다른 기간과 다르게 이 기간 이후 추진되었던 정책 효과인지, 아니면 외적 정책 환경 변화, 사회적 풍조 등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심층 분석이 요구됨.
- 전자에대한 논거로서 2018년 9월 새롭게 추진된 아동수당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아동수당정책은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8년도시행계획부터새롭게제시되었 으며,정책과 출산 관련 변인 간 명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이 필요함.

[그림 2-2] 출생아 수, 조출생률, 합계출산율의 추세와 변화율 추세(2011-2020년)

(단위: 명, 인구 1천명 당 명, 가임여성 1명당 명)





<추세의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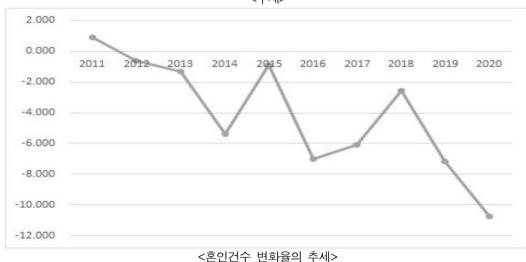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1a). 인구동태건수 및동태율추이(출생,사망,혼인,이혼)[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 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에서2022.1.1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출산과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인구 동태 요인 중 하나인 조혼인율과 혼인건 수 역시 최근 10년 가 지속 감소하고 있음.
- 혼인건수는 지난 2011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음.
- 혼인건수의변화율은관측기간내내등락을반복하면서감소하는동시에최근더욱감소폭이 커지는 경향이 관측되고 있음. 관측기간내지속적으로감소하고 있는혼인 관련 변인의 상기양상은 결과적으로 출산율 저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그림 2-3] 혼인건수와 조혼인율, 혼인건수의 변화율의 추세(2011-2020년)

(단위: 건, 인구 천명 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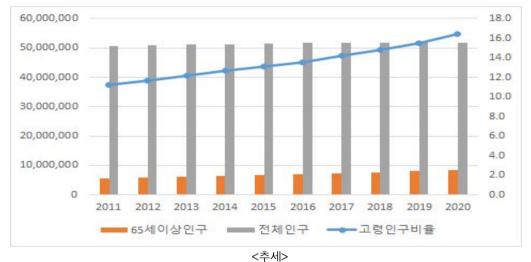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1a). 인구동태건수 및동태율추이(출생,사망,혼인,이혼)[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 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에서2022.1.1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인구고령화양상을직접적으로보여주는인구변동특성으로서두루활용되는집계변인은 65세 이상 인구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고령인구비율임.
- 고령인구비율은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관측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65세 이상 인구 규모의 급격한 증가와 전체 인구 규모 증가의 감소(2020년 총인구감소)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고령인구비율의 전년 대비 변화는 2014-2015년, 2017-2018년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이는 전년 대비 변화폭이 감소한 것이며, 관측 기간 내내 지속적인 양(+)의 값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인구비율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특히 2018년 이후 전년 대비 변화폭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고령인구비율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음을 의미함.
- 이는 고령인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양적, 질적으로 증가할 필요성과 더불어 향후 정책 대응 부담이 더욱 가중될 개연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그림 2-4] 고령인구비율, 65세 이상 인구 규모, 총 인구 규모의 추세와 변화율 추세(2011-2020년)

(단위: 명,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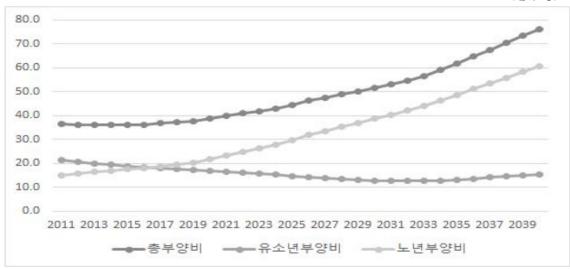


자료:통계청(2022a).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데이터파일].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I2에서 2022.1.1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향후고령인구에 대한정책적부담의가중은노년부양비를포함한총부양비가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성을 통해서도 두루 제시되어 왔음.
- 구체적으로, 2020년통계청장래인구추계에서제시되고있는총부양비는 2011년 36.3에서 2040년 76.0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총부양비증가전망은출생아수감소에 따른유소년부양비의감소 전망에도불구하고, 2011년 15.0에서 2040년 60.5로 무려 4배 이상증가할것으로 전망되는 노년부양비급증에 크게 기인하고 있음.
- 다만,유소년부양비역시생산연령인구의감소전망으로2030년대중반부터증가할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림 2-5] 부양비의 추세 전망(2011-20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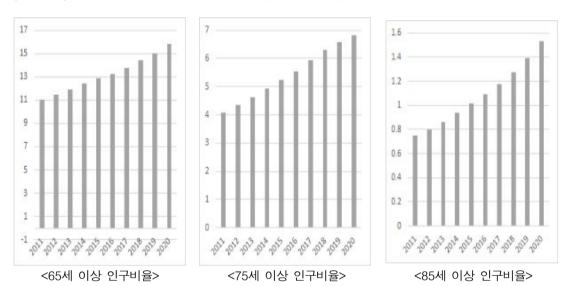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통계청(2021b). 주요 인구지표(성비,인구성장률,인구구조,부양비 등)/전국[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에서 2022.1.1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인구고령화의심화특성은최근10년간고령,초고령인구비율의증가양상을통해서도쉽 게 파악할 수 있음.
- 보다구체적으로,65세이상인구비율의증가폭에비해서,75세이상인구비율의증가폭이, 또한75세이상인구비율증가폭보다85세이상인구비율의증가폭이더욱 커지는양상이 나타남.즉,연령대가높아질수록(초고령인구일수록)전체인구중비율의증가율이더욱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6] 65/75/85세 이상 인구비율의 추세(2011-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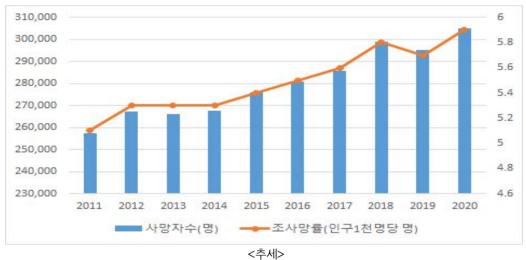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2b).시군구/성/연령(5세)별주민등록연앙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 &tblId=DT_1B040M5에서 2022.1.1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앞서, 저출산관련 변인에서 잠깐 언급하였던 총 인구 규모 감소는 두루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출생아 수의 급감과 사망률의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하고 있음.
- 특히사망률의 증가는 총사망자 수의 증가와 조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으로 확인가 능함. 최근 10년 간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의 추세는 2019년을 제외하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사망자수와조사망률의연평균변화율이지속양(+)의 값을 보이고 있는 특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7] 사망자 수, 조사망률의 추세와 변화율의 추세(2011-2020년)

(단위: 명, 인구 1천명 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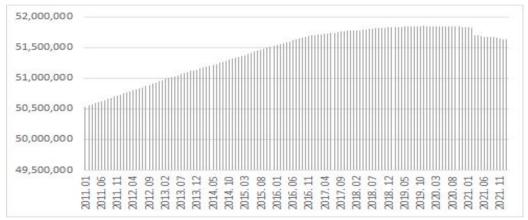
<추세의 변화율>

자료:통계청(2021c).사망자수,조사망률,기대수명[데이터파일].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 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에서 2022.1.1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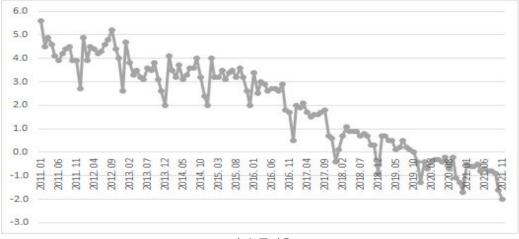
- 한편,인구규모감소와관련하여,최근10년간의자연증가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였음.또 한처음으로 2019년11월0이하로떨어지며(-0.4),이후다소등락을 반복하였지만지속 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최근관측된0미만에서의지속적인자연증가율의감소양상은결과적으로2028년예견되었던총인구규모의감소가2019년말부터나타나는것으로훨씬앞당겨지게한직접적요인으로이해됨.

[그림 2-8] 총 인구 규모, 자연 증가율의 추세와 변화율의 추세(2011-2020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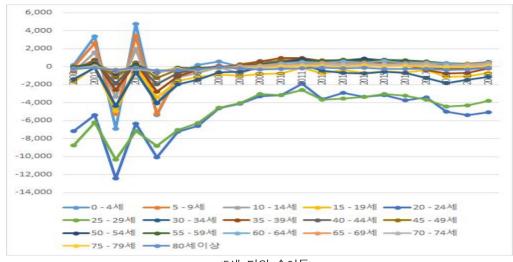
<자연 증가율>

자료: 통계청(2021a).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추이(출생,사망,혼인,이혼)[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에서 2022.1.10. 인출한 자료; 통계청(2022c). 행정구역 (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에서 2022.1.1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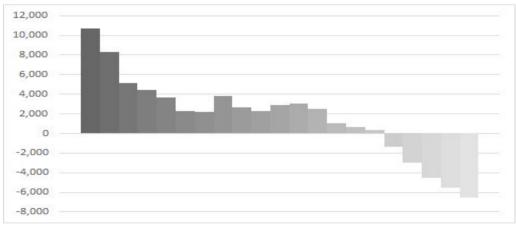
-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대응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파악되어야 할 또 다른 인구 변동 특성은 지역 간 인구 이동의 특성임.
- 이는 최근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인구 감소가 지역 간 인구 이동에 크게 기인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과 맞물려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요인이기 때문임.
-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 인구 감소는 지역 간 인구 감소에 의한 인구의 사회적 감소에 크게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감소가 자연적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장인수 외, 2021).
- 즉, 현재우리사회가마주하고 있는지역 인구 감소 양상은 어느시점에서 크게 변동된 것이 아니라누적적으로 오랜시간에 걸친 인구 규모 감소의 결과이며, 지역 인구의 자연적 감소보다는 사회적 감소가 더욱 크게 견인하였다는 것임.
- 또한,1990-2000년대초반부터시작된인구감소지역의젊은층의사회적유출및중고령 층 인구 규모 증가가 최근 이들 지역의 출생아 수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지역인구감소양상에 대한심각성 인식은최근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행정안 전부의선별적 지원 강화 세부과제가 새롭게 구성된 특성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음.
- 하기그림의인구감소사례지역에서 확인할수 있는 것과 같이, 이들지역의 5세 단위 순이 동과 이들지역의 자연적 변화의 추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측기간 초반의 20−30대 젊은층 유출이 이후 기간 자연적 감소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2-9] 인구 감소 지역(사례 지역)의 5세 단위 순이동과 자연적 변화(2000-2020년)

(단위: 명)



<5세 단위 순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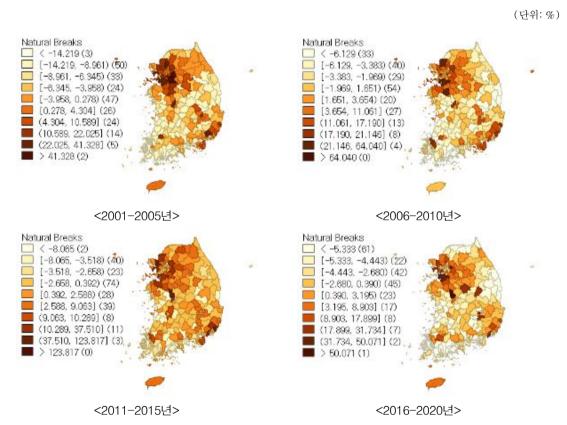
<자연적 변화>

자료: 통계청(2021a). 인구동태건수 및동태율추이(출생,사망,혼인,이혼)[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에서 2022.1.10. 인출한 자료; 통계청(2022c). 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에서 2022. 1.1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지역간인구규모의양극화역시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서상 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특성임.
- 우리나라지역단위인구규모는총인구규모의 감소와다르게 꽤오래전부터시작되어왔음.2001-2020년(20년간)의관측기간내2001-2005년의기간동안인구규모의연평균변화율이부(-)의 값을보이는지역은 전체228개시군구중153개지역이며,최근5년간인2016-2020년의 기간에는 164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인구변화율은지속부(-)의값을보이는지역은감소폭이더욱커지는반면,정(+)의 값을 보이는 지역은 증가율 변화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인구 규모의 양극화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자, 지역 간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관측기간내내다양한국가균형발전정책이추진되었음에도불구하고,인구변화율은거의 동일한특성이지속 관측됨. 하기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측기간 내 5년 단위의 지역인 구규모의 연평균 변화율의 공간적 분포는 지속 고착화되고 있는 지역 인구 규모 변화율 특 성을포함하여 지역 인구 규모의 양극화 심화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임

[그림 2-10] 시군구 단위 지역 인구 5년 단위 연평균 변화율 분포(2001-2020년)



자료: 통계청(2022b).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 tblId=DT_1B040M5에서2022.1.1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소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의거한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지난2006년1차로추진된 이후, 출산관련집계변인들은최근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정책 추 진 여건을 포함한 정책 환경의심도 있는진단 및 지속적인 정책 추진의 당위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할 것임.
- 추가적으로본절의논의는이후보고서에서논의될 향후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의구체적인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적 작업으로서의 의미도 존재함.
- 저출산과고령사회관련인구변동은 모두동일한출산내지는인구구조변화등상기살펴 본인구변동특성으로설명할수있지만, 각각의 대응정책과고려되는경우다른 특성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 저출산대응 정책 관련 출산 변인의 특성은 대체적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 하는 요인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가령,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여러 논의에서 출산관련 변인은 두루 활용됨. 이러한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암묵적인 전제는 어떠한 저출산 대응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었다면, 저출산관련 줄산 변인들. 가령 출산율이나 출생아 수가 제고되었을 것이라는 점임.
- 그러나저출산 대응 정책은출산율, 출생아수 등으로 대표되는출산관련 변인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만 견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구 문제 의식 및 가치관을 고취시키기 위 한 인구 교육,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 모자보건과 태아 생명존중의 중요성 고 취, 자녀 임신·출산·양육·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의 다양한 목적을 견지하기 위하 여 추진되고 있음.
- 반면, 고령사회 정책 관련 변인은 저출산 분야에서 나타나는 효과성 논의에의 활용 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며, 정책 환경을 해석하고 진단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상대 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임.
- 단적으로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인구 동태 요인을 활용하기보다는, 정책수 혜자의 만족도나 삶의 영위 환경 및 경제적 여건 개선에 더욱 주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지금까지의논의를 종합하면, 저출산 및고령화로 대변되는 현재의 인구 변동을 보다심도 있게 고찰하고 해석하는 것은 향후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위한 정책 환경을 내실 있게 관측하고 해석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다만,추가적으로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어느정도효과적으로추진되었는지를보다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인구 변동 특성 관측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이는 상기 지표들과같은 거시적이고집계적인 특성과 더불어 정책수혜의 특성과 맞물린미시적 인특성에 대한 집계적 정보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제 3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분석

제1절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영역 제2절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영역 제3절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영역 제4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영역 제5절 소결

제 3 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분석

□ 서론

- 본장에서는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2년시행계획을보다심층적으로분석하고 보다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특히, 시행계획의 구성 및 배 포 이전에 보다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을 견지하여 다각적인 내용 분석 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즉, 매년 수행하여야 하는 형식적, 명목적인 과업이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분야의 사업의 내용과 5개 년내용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자함. 이러한논의는 이후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기간인 2023-2025년의 각사업에 대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시행계획 수립 방 향 관련 함의를 제시할 것으로 보임.
- 본장에서의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2년시행계획의심도있는검토는제4차각부처에서제출된 2022년추진예정사업에 대하여세부사업별유기적연속성,과제명과과제목표의정합성,성과지표(목표)의적절성을검토하고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영역별세부과제를 언급하는 형식을 취함.6)
 - 첫번째로시행계획사업별내용검토는세부사업별유기적인연속성을검토하는측면에서 제출된 2022년 시행계획사업의 내용이 이전 연도인 2021년 해당사업의 향후 개선 및 보완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임.
 - 두 번째로 과제명과 과제목표 간 정합성 검토는 과제명과 과제목표가 동일한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임.
 - 세번째성과지표(목표)의적절성검토는성과지표와성과목표가과제명(과제목표)을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임.
- 이러한검토항목의설정은지금까지 매년수행되어온1,2,3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성과 평가에서 지적되고 있는 적절한시행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견지한 데 기인하고 있음. 아울 러 상기 검토항목은 공히 앞서 논의한 각분야별 추진전략 및목표와의 정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6) 2021}년 시행계획과의 비교 분석은 신규 사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 아울러,이러한검토는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제시되고있는데개의영역인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사회 조성,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3. 모두의 역량이 고루발휘되는 사회,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별로 추진하고자 하며, 각 절로 구성됨
- 추가적으로본장에서주목하고 있는 논의는 상기 네 개 영역별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사업 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기본계획의 취지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사항을 과제별로 제시하는 것임.
- 각 영역별 보다 구체적인 검토 사항은 이후 각 영역별 논의를 통해 제시하고자 함.

제1절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영역

1. 세부사업별 유기적 연속성

- 대체적으로세부사업별2022년의 추진 예정사항은2021년 추진실적과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구성되고 있었으나, 다만하기와 같은 몇 개의 범주에서 유기적 연속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다음과 같음.
 - 이전연도사업과의정합성 및 다른 과제와의 차별성이 다소낮은 것으로 보이는 과제(가령,1-1-라. 남성의돌봄권보장(사회적인식확립) 과제는 2021년추진실적내성평등한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사진전이 단일년도 추진 사업인지, 그렇다면 사업의 연속성을 보다제고하기 위하여 상기 사진전의 결과물 등을 활용한 2022년 추진 내용이 구성될필요. 아울러 보다 남성의 돌봄권 보장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직접적인 사업이 추진될 필요, 기업의 유연근무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은 다른 과제와의 유사한특징이었으며, 본 과제만의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라고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코로나19라는외생적여건변화로인한과제추진성과의애로사항과관련하여,코로나19에기인하여당초수립한과제를정상적으로추진하기어렵거나성과목표치달성이여의치않을것으로판단되는경우,유기적정합성을고려하여성과목표를지속변경하는보완작업이요구됨(가령,1-2-나장시간근로해소및휴식권보장과제의적립금사용률2022년이후성과목표수치는2021년실적치와크게괴리가있는것으로보이며,이를수정,보완할필요2-2-나성차별·성희롱예방정책전달체계강화(현장의성차별·성희롱사건대응강화),3-1-가아동돌봄기관의공공성강화(국공립등공보육확충,국공립어린이집 책무성 강화,안정적 서비스 제공-영유아보육료,민간기관투명성제고),3-2-가초등교육혁신을통한충분한교육제공(교육시간확대,유·초연계교육과정시

범운영)도 유사한 한계점이 나타남.

2. 과제명과 과제목표의 정합성

- 과제명과과제목표 간 유기성은 거의 대부분의 과제에서 견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과제명과과제성과지표간유기성이낮다고보여지는사업(3-1-나돌봄서비스의질 제고(교사대아동비율,서비스격차해소-지역별균등서비스,서비스질제고(어린이집))과 성과지표인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국비지원실적(%)간직접적인연관성및포괄성이 낮다고보여짐,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성과지표로의 보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은 다음과 같은 세부 범주에서의 한계점이 나타남.
 - 먼저,2022년성과목표가추가보완될필요(1-1-나부모모두의육아휴직확산및육아휴직사용문화정착(부모모두육아휴직지원신설·도입),1-1-나부모모두의육아휴직확산및육아휴직사용문화정착(육아휴직소득대체율상향),2-1-나성평등경영공표제도입(경영공시대상기업의성별고용현황분석및공표),2-1-다기업내여성대표성제고및성평등경영지원(여성역량강화사업운영),1-1-나부모모두의육아휴직확산및육아휴직사용문화정착,2-2-가고용상성차별·성희롱피해구제및예방강화(노동위원회내성차별·성희롱구제절차신설),4-3-나아동보호체계공공성강화(미성년후견인제도활성화),5-2-가모자보건중심에서포괄적법제사업정비(모자보건법개정),5-2-가모자보건중심에서포괄적범제·사업정비(포괄적지원),5-3-다의료서비스접근성강화(취약지지원-재택의료시범사업),
 - 특정과제의성과지표가부재,해당사항없음등으로표기되어있는경우성과지표가왜해당사항이없는지에대한근거가추가제시될필요(1-1-나부모모두의육아휴직확산 및육아휴직사용,1-3-가일하는방식및문화혁신(유연근무활성화)),2-1-가공정한채용환경조성(채용절차공정성강화),2-2-가고용상성차별·성희롱피해구제및예방강화(공공부문성차별·성희롱금지및권리구제법제마련),3-1-나돌봄서비스의질제고(교사대아동비율적정성제고),4-2-가신속한출생신고지원,4-2-나정신건강예방·지원 강화(학생의 정신건강 지원), 1-5-2 생애 전반 생식건강관리 및 질환 예방, 5-3-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의료 인식 개선).
 - 2-1-가채용성차별판단통계기준마련검토,2-1-다적극적고용개선조치(AA)제도

강화는 각각의 과제목표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가 동일한 특징이 있음. 이를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

- 3-2-가초등교육혁신을통한충분한교육제공(교육공간혁신)의경우초등1 학년교실환 경개선이과제목표임에도불구하고,성과지표는학생,학부모만족도임.예산현황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같이목표물량대비실적등의실질적인성과지표가보완될필요,성 과지표에만족도를고려하고있는다른세부사업인5-3-가건강한임신,출산지원(임산 부,영아건강관리-생애초기건강관리),5-3-가건강한임신.출산지원(결혼이민자 지원),5-3-나수요자중심의안전한난임지원강화(안전한시술,정보제공상담)역시 유사한 맥락임.
- 연도별성과목표가누적수치로구성될필요.가령5-3-가건강한임신·출산지원(여성 장애인지원)사업의경우연도별성과목표가각연도별장애친화산부인과지정개소수 로구성되어 있어, 연도별목표수치가 하락되고 있다는 인상을 줄소지가 있으므로, 누 적 개소 수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제시된 성과지표가세부과제의 목표를 온전히 포착하고 있는지 의문인 과제들이 있음. 가령4-1-나아동수당제도개편검토(아동수당확대)는"아동에게아동수당을지급하여 아동양육에따른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아동의기본 적권리와 복지를 증진"이라는 과제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는아 동수당만족도(점),아동수당신청률(%)를제시하고 있어아동양육에 따른경제적부담 경감 정도에 대한 정책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 는 (보조) 성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4-1-다가구별아동지원강화(다자녀가구생활밀착형제도마련)과제의경우과제명에 다자녀가구생활밀착형제도마련이 있음에불구하고, 과제목표는 제도마련이아니라 정책영역을 구체화하는것이며, 성과지표는 다자녀가구기준완화협의건수임. 과제명 이 제도마련을 위한 기반구축 등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과제명을 수정하기 어려운경우 과제 목표와 성과지표가 최대한 제도 마련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될 필요

4.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사업취지 등 보완

- □ 1-3-가일하는 방식 및문화 혁신(기업 맞춤형 컨설팅, 간접노무비 등지원), 일하는 방식 및문화 혁신(클라우드바우처 지원), 일하는 방식 및문화 혁신(비대면서비스바우처, 공동활용화상회의실 구축)
 - 상기사업은고용환경및일하는문화개선을도모하기위한목적을견지하고있으나,저출 산 및 고령사회정책 대응에 대한 효과성 등논의를 보완할필요. 제출된사업 내용은 새로

운 근무 방식으로서의 재택 및 유연 근무 등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종의 고용 환경 개선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다분한 것으로 보임. 보다 구체적으로 과제 목표와 내용에 저출 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논의가 추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5-1-다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

○ 상기사업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성착취물 미디어의 유통방지 관리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임. 다만, 성범죄 피해 방지와 보호에 대한 기술 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낮은 반면, 과학기술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여짐. 참고로 OECD SOCX의 가족 영역 내 현물 급여(in kind) 중 성폭행, 가정폭력(Sex assault & domestic violence) 정책이 있지만, 상기 과제는 현물 급여와 직, 간접적인 연관성이 낮고 사업 성격 상 범주 역시 다소 배타적인 특징을 띠고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서의성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과제 목표 및 내용 등이 추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제2절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영역

1. 세부사업별 유기적 연속성

- □ 대부분의 과제들은 2021년 보완계획에 따라 2022년 시행계획 내용을 구성하여 유기적 적합 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하기의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일부 과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2-1-라고령자만성질환관리강화의경우(1)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과(2)노인건강관리사업은2021년사업의 한계를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음. 그러나(3) 적적성 평가사업의 경우 사업 내고혈압, 당뇨병 외 만성질환 대상 확대 신속 추진이 필요하다고하였으나, 2022년 과제는 '고혈압, 당뇨병 적정성 평가에 따른 우수의원 공개'만이 과제로 되어 있음.
 - 일부과제(20여개)에서는전년도과제에대한한계또는보완점이제시되지않아유기적정 합성 검토가 불가하였음.
 - '한계사항'의해당없음은 2022년 신규과제, 또는 2021년 종료과제에 한정될것으로 보이나, 일부 과제는 연속과제임에도 주요성과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과제명과 과제목표의 정합성

- □ 과제명과과제목표의정합성은대부분의과제에서충족되고있는것으로보이나,일부과제에 서는과제명과과제목표가동일하거나,과제목표와과제명의정책포괄범위가상이하며,과제 명과 과제목표가 다소 상이한 것으로 판단됨.
 - 과제명과 과제목표가 동일한 과제
 - 1-1-가저소득노인에대한소득보장강화(기초연금제도),1-3-가신탁을통한종합재 산관리기능 활성화는 과제명과 과제목표동일하며, 이는 각 과제의 추진을 통해 추구하 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구체적 목표 제시 필요
 - 과제명과 과제목표의 정책 포괄범위 상이
 - (과제명<과제목표)1-1-나노인일자리사업을통한노년기소득보장의경우노인일자리사업은사회참여와소득보장두가지목표로운영되며,현재제시된과제목표는이것을 적절히반영하고 있다고보임.다만,과제명은'소득보장'중심으로 과제의목표를 포괄하고 있다고보수 없음./2-1-가노인건강검진강화는 과제목표에 비해과제명의 범위가협소함.목표에는사후관리를 통한 생활습관개선까지포함되어 있으며,과제내용은'건강검진항목조정,주기확대등'으로 과제명만으로는 노인건강검진강화에 초점을 맞춘것으로보여,과제명수정필요.과제명을"노인건강검진강화"에서"노인건강검진개선"이적절할것으로보임./2-1-마고령자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신건강서비스확충(고령자자살예방대책추진)은 과제명은'고령자 자살예방대책추진'이지만,실제사업내용 및과제목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과제내용역시 자살예방대책추진의한영역인 '생명지킴이 교육실시'로 한정되어 있어 과제명과 과제목표, 내용을 보완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2-1-마고령자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신건강서비스확충(노인우울증스크리닝등)은 과제목표에따르면정신건강문제조기발견 및치료적개입강화'로 명시되어 있어, 과제명의 포괄성을확대하여, '노인 정신건강문제조기발견 및치료'로 수정할필요 있음. 전체 사업 내용이 우울증 이상의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과제명>과제목표)1-3-나고령층차별금융착취방지및자산보호방안추진(공공후견제도-공공신탁시범사업연계)은과제명은고령층전체를포괄하나,과제목표는'고령치매환자'로 한정하고 있음.
 - 과제명과 과제목표가 다소 상이한 과제
 - 1-3-나고령층차별·금융착취 방지 및자산보호방안추진의경우 과제내용은 '차별'보다는고령층의 금융소외가 적절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령층금융소외, 착취 방지 및 자산호보 방안추진"으로 하면 목표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임./3-2-나 퇴원 직후 이행기의 집중 돌봄지원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복귀 확대의 경우 과제명은 '집중돌봄지원을

통한지역사회로의복귀확대'이지만,과제목표는'회복기집중재활제공'으로과제명과 과제목표의 정합성이 다소 낮음.

3.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 □ 성과지표의적절성역시대부분의과제에서충족되고있는것으로보이나,일부과제에서는과 제의목표에부합하지않는성과지표가제시되거나,과제의목표를포괄하지못하고일부만포 괄하는 한정적 성과지표가 제시되거나, 성과지표 내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음.
 - 과제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지표
 - 1-1-가저소득노인에대한소득보장강화(기초연금제도)의'부당수급환수율'은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지표이지만,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라는 과제 목표 와의부합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1-2-가국민연금 급여 수준제고(급여 내실화)는급여의 내실화가과제의 목표이지만,성과지표인수급률은대상자 확대와관련된내용으로급여내실화라는측면을고려한성과지표로변경될필요 있음./1-2-나퇴직연금의연금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은제도개선이중요한과제이지만'교육실시횟수'가성과지표로제시되어 있어과제의 목표와 다소 정합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2-1-가노인건강검진강화는현재의 과제명만 적용한다면 현재의 지표가 적절할수 있으나, 앞서 과제명과과제목표의 정합성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개선이 필요함. 과제 내용을 모두 포괄하기위해서는 '65세 이상건강검진수검률' 지표를 '건강검진체계 개선을 위한노력'에 대한정성지표로 수정할필요 있음.

○ 과제의 목표를 포괄하지 못한 제한적 성과지표

- 1-3-나고령층차별금융착취방지및자산보호방안추진의경우금융소외에따른성과 지표가누락되어 있어보완 필요함./2-1-다고령자 맞춤형건강관리프로그램 확대운 영(국민체력인증센터운영.어르신체육활동지원.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지원)은세 가지 과제내용 중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지원'에 대한 성과지표가 없으므로 이 에 대한 보완 필요함./2-1-라고령자 만성질환관리 강화는 고령자 만성질환관리체계 강화라는 과제목표에 부합하기 위하'일차의료 만성질화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관련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노인 건강 관리사업의경우, 사업내용이상이하므로별도의지표가 있어야할것으로보임./2-1-마고령자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신건강서비스확충(고령자자살예방대책추진)은과 제명은'고령자자살예방대책추진'이지만,과제내용은자살예방대책추진의한영역인 '생명지킴이교육실시'로한정되어있고성과지표역시'생명지킴이교육'으로한정되어 있어보완이 필요함./2-3-다치매돌봄을위한지역사회인프라확대는케어플랜등사 례관리강화를 위한관리체계 구축에 대한성과지표가부재하여 보완이필요함./3-3-가,나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확대,재가중심장기요양서비스확충은이동지원서비스 도주요한과제내용으로구성되어 있으며, 타과제내용들이성과지표와연동되어있음을 고려할때'이동지원서비스'에 대한성과지표가추가되어야할것으로보임./4-2-가지 역 고령친화지표 개발 및 평가 추진은 과제명 및 과제목표에는 평가 추진까지 명시되어 있으나, 성과지표상에는 지표개발만 마련되어 있어 평가 관련 사항 추가 필요

○ 성과지표 내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시

- 5-2-라성년후견제도활성화를통한의사결정지원과5-2-마웰다잉의사회문화적기 반조성 추진의 경우 성과지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음. 이들 사업은 연구실 시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의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과지표가 부재할수 있다고 생 각할 수 있으나, 타과제들의 경우 연구수행 자체가 성과지표로 제시되기도 함. 따라서 연구수행 또는 제도적 기반마련과 같은 과제 수행을 위한 준비단계의 과제들에 대한구 체적이고 통일관 성과지표 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사업취지 등 보완

□ 건강하고능동적인고령사회구축영역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특성과취지에대해사 업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과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제3절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영역

- 1. 세부사업별 유기적 연속성
 - 세부사업별 유기적 연속성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범주에서의 보완이 필요함.
 - 이전연도의추진결과에따른 한계를 보완하는측면에서의 2022년추진계획수립의 필요성(2-1-가산업별역량체계(SQF)구축·활용지원,2-2-라성인문해교육운영및디지털역량수준햑상·격차해소,3-1-다청년창업지원(청년식품창업Lab운영),3-1-다청년 창업 지원(해양수산부),
 - 코로나19라는외생적여건변화로인한과제추진성과의애로사항과관련하여,코로나 19에기인하여당초수립한과제를 정상적으로추진하기어렵거나성과목표치달성이여의치않을것으로판단되는경우,유기적정합성을고려하여성과목표를지속변경하는보완작업이요구됨(1-2-나미래역량개발을위한학습·활동기반조성(숙련기술체험기회제공),1-3-가진로교육강화및고졸취업활성화지원(기업발굴및취업연계-취업지원관),3-1-가청년의진로탐색지원과핵심인력양성,3-1-라청년직장문화개선및산업안전강화(청년친화직장문화(직장내괴롭힘근절)).3-3-나청년생활의질개선을위한건강보장,4-2-가경력단절여성대상전문분야및맞춤형재취업지원강화(고부가가치직종직업훈련확대),4-2-다경력단절여성의창업지원강화(맞춤형창업지원서비스 제공), 4-3-가 과학기술 및 창업 등 유망분야 여성 진출지원 확대
 - 일부 과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2-1-가산업별역량체계(SQF)구축, 활용지원의경우과년도와같이사례발굴중심의사업을 운영하고자하며, 한계에서 제시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별도의 추진계획은 명시되지 않음/2-2-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콘텐츠 확충 및 제공방식 다양화의 경우 2022년 과제내용은 STEP 고도화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2021년 한계인부처별 협조와 홍보, 정부지원제도 내 지원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일부과제(10여개)에서는전년도과제에대한한계또는보완점이제시되지않아유기적연 속성 검토가 불가하였음.
 - '한계사항'의해당없음은 2022년 신규과제, 또는 2021년 종료과제에 한정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과제는 연속과제임에도 주요성과 제시에만 그치고 있음.

2. 과제명과 과제목표의 정합성

- □ 과제명과과제목표의정합성은대부분의과제에서충족되고있는것으로보이나,일부과제에 서는과제명이과제목표에비해포괄성이넓거나,과제내용의분리가필요하거나,일부과제에 서는 과제명과 과제목표의 정합성은 담보되나 과제내용과의 연관성이 낮게 나타남.
 - 과제명이 과제목표에 비해 포괄성이 넓은 과제
 - 2-1-나온라인학습플랫폼구축및플랫폼간역량강화는일차적과제로플랫폼구축에 대한내용을 과제목표 및과제내용에 제시하고 있으며, 플랫폼 간역할강화에 대한내용 은누락되어 있음./2-1-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협력체계 강화는 과제명만으로 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협력체계 강화로 볼 수 있으나,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처간 협의 중심으로 되어 있음.

○ 과제내용의 분리가 필요한 과제

- 2-2-가생애주기를고려한대학의평생교육기능강화와2-3-가평생교육,직업훈련참여를위한학습비지원의경우하나의 과제목표및 과제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과제내용및목표는2-2-가를중심으로구성되어2-3-가의내용은과제내용전반에서누락된것으로보임.2-3-가는동일한과제내에서고용노동부에서도사업을진행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차원에서 실시, 교육부는 평생교육 측면에서 실시하는과제로 2-3-가의 과제내용을 2-2-가와 분리할 필요 있음.
- 과제명과 과제목표의 정합성은 담보되나 과제내용과의 연관성이 높지 않은 과제
 - 2-1-가산업별역량체계(SQF)구축,활용지원의경우과제명과과제목표의정합성은 충족되나, 하위 과제내용은 주로 '사례발굴'에 대한 논의로 구성되어 있음.

3.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 □ 성과지표의적절성역시대부분의과제에서충족되고있는것으로보이나,일부과제에서는과 제의목표에부합하지않는성과지표가제시되거나,과제의목표를포괄하지못하고일부만포 괄하는 한정적 성과지표가 제시되거나, 성과지표 내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음.
 - 2022년성과목표가추가보완될필요(1-2-나미래역량개발을위한학습·활동기반조성(교사역량개발플랫폼구축),1-2-나미래역량개발을위한학습·활동기반조성(숙련기술체험기회제공),4-1-가경력단절예방서비스확대(여성의경력단절예방을위한법적기반 강화),4-3-가 과학기술 및 창업 등 유망분야 여성진출지원 확대,
 - 특정 과제의성과지표가부재, 해당사항 없음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성과지표가 왜

해당사항이없는지에대한근거가추가제시될필요(1-3-나사회수요를반영한대학교육과정운영과취업연계,3-1-라청년직장문화개선및산업안전강화(청년친화직장문화(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5-1-다 연령차별금지 구제제도 개선,

- 또한,성과지표로만족도를설정하고 있는과제의 경우정책수혜인원등의실질적인성과지표가보완될필요(1-2-나미래역량개발을위한학습·활동기반조성(숙련기술체험기회제공),1-3-가진로교육강화및고졸취업활성화지원,1-3-가진로교육강화및고졸취업활성화지원(기업발굴및취업연계-취업지원관),3-3-가청년의자산형성지원,4-2-나경력단절여성고용사업주지원강화(인턴십지원),4-3-가과학기술및창업 등 유망분야 여성 진출지원 확대
- 5-2-나퇴직인력이전문성을발휘할수있는취업기회확대(고용노동부)는신중년적합 직무고용장려금과 퇴직전문인력컨설팅지원이라는 두가지 과제목표가 있음에도신중 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승인 인원수로만성과지표를구성하여퇴직전문인력컨설팅지 원에대한지표가누락됨./5-3-라신중년고령자의여가기회확대(보건복지부)는경로 당과노인복지관을 모두포괄하는 과제임에도불구하고 성과지표는경로당에국한되어 있음.

4.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사업취지 등 보완

- □ 1-1-가 기본적 교육비에 대한 공적영역 지원과 교육복지안전망 강화
 - 본사업은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사업임. 교육급여는저소득층초·중·고학생에 대한 교육급여지원으로저출산·고령사회정책대응사업으로서의의미가보다부각될필요가있음. 과제목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같이 교육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지원으로서교육복지사업으로서의성격이 강한것으로보임.기존에시행하고있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저소득층의출산에유의미한영향을미쳤다면기초생활보장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의 성격을 내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필요가 있음.
 - 출산에 대한 비용 중하나로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꼽을 수 있음. 이론상으로 다른조건 이동일할 경우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감소는 출산의 편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
- □ 3-1-가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과 핵심인력 양성(신진예술가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 본사업은 청년의진로탐색지원과 핵심인력양성을목적으로 신진예술가 및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음. 본 과제는 청년층의 입직을 지원

하고 생애주기 내 안정적인 직업 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의 필요성·당위성 등을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음

- □ 3-3-가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확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청년저축계좌
 - 상기 정책은 각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저소득 청년에 대한 경제적지원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는 사업임. 본사업은 청년층의 고용률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이들의 임금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청년 및 고용 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고령사회대응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제4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영역

1. 세부사업별 유기적 연속성

- 세부사업별 유기적 연속성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범주에서의 보완이 필요함.
 - 이전 연도의추진 결과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의 2022년추진 계획수립이 필요함(1-1-가혼인·혈연중심의가족개념확장 및다양한가족차별금지법제화,1-2-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사회참여 확대,1-2-다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사회참여확대(이주배경청소년 지원), 3-2-다소득 기준 사회보장 체계를 위한 기반 구축
 - 코로나19라는외생적여건변화로인한과제추진성과의애로사항과관련하여,코로나 19에 기인하여 당초 수립한 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거나 성과목표치 달성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유기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지속 변경하는 보완 작업이 요구됨(4-1-가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

2. 과제명과 과제목표의 정합성

○ 보완이 필요한 세부과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은다음과같은세부범주에서의한계점이나타나고있어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 먼저, 2022년성과목표가추가보완될필요(1-1-나(가칭)생활·돌봄공동체법제정, 4-2-가지역밀착형사회서비스공급체계구축(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 실),4-2-가지역밀착형사회서비스공급체계구축(국토교통부),4-2-나인근생활권피 폐화방지(국토교통부),5-1-나자립생활및건강관리제품·서비스활성화(고령자자립 생활지원기술개발),5-3-가교육인프라조정(교원양성과정개선),5-3-다주택수급 체계 조정)
 - 특정과제의성과지표가부재,해당사항없음등으로표기되어있는경우성과지표가왜해당사항이없는지에대한근거가추가제시될필요(1-1-가혼인·혈연중심의가족개념확장및다양한가족차별금지법제화((가칭)평등법논의),2-2-가/2-2-나세대간교류와소통강화를위한지원방안모색,2-3-가/2-3-나연령통합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3-2-다소득기준사회보장체계를위한기반구축,3-3-나특고및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5-1-가스마트돌봄기술개발및보급확대(고령친화제품),5-2-가고령화대응 사람중심의기술혁신지원체계구축,5-3-가교육인프라조정(학교운영다양화),5-4-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 또한,성과지표가과제목표의일부만을 포착하고있어추가적인성과지표설정이불가 피한경우이에 대한보완이요구됨(가령,3-1-나사각지대해소를통한국민연금가입 확대의경우비정형근로자확대및단시간·일용근로자의사업장가입자적용기준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나, 성과지표는 후자만 반영되어 있어 보완될 필요).

4.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사업취지 등 보완

- □ 3-3-나특고및플랫폼노동종사자보호(배달,대리기사),3-3-나특고및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SW종사자), 3-3-나 특고 및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
 - 상기과제들은특수형태고용자들의불공정관행을해소하기위한표준계약서작성관련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기 과제의목표와 내용을 직, 간접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논의를 담을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노동자의 대부분이중장년층으로보고되고있음.즉, 배달및대리기사의경우40 대중후반에 처음플랫폼노동을경험하고 있으며, 가사도우미의 경우에는 50대후반의 장년층이다수종사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남. 특히60세 이상이(대부분65세이상)참여 하는노인일자리에서도최근플랫폼노동을이용하여 가사도우미에종사하는노인이증 가하고있는추세임. 이러한맥락에서플랫폼노동종사자를보호하기위한시행계획은고 령인력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완화하기위해 필요한사안으로 사료됨.즉, 보다구 체적으로 고령사회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날수 있게 과제명 및 과제 내용을 수정할 필요

제5절 소결

- 1. 2022년 시행계획 사업별 검토 종합
 - 세부영역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과년도과제추진실적과의유기적연속성)일부과제에서2021년추진실적의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보이지 않아 차후 시행계획 자료 작성 시 이를 안내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등의외생적여건을 고려하여성과지표설정에 대한지속적인환류과정이 반영될 필요
 - (과제명,과제목표간정합성)일부과제에서는과제명과과제목표가동일하거나,과제목 표와 과제명의 정책 포괄범위가 상이하며, 과제명이 과제목표를 대표하지 못함.
 - (성과지표,성과목표의적절성)일부과제에서는과제의목표에부합하지않는성과지표 가제시되거나, 과제의목표를 포괄하지 못하고 일부만포괄하는 한정적 성과지표 제시: 성과지표, 성과목표가 없는 경우(없다면 이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 이는 향후 성과평가 추진시 애로사항으로도 작용할 개연성이 있음. 다른 과제에 동일한 성과 지표가있는 경우도 보완될 필요(과제를 병합하거나, 각과제별성과지표를 다르게 설정 하는 방향 등), 과제 목표와 성과지표의 방향이 상이한 경우
 - (사업취지등보완)저출산및고령사회대응정책으로서의필요성·효과성등이좀더명 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과제 목표 및 내용 등이 추가 보완될 필요
 - (기타)기 종료사업이 불명확한 과제(과제 추진기간과 종료시점이 분명히 명기될 필요
 - 종합적으로 각 영역별 세부사업내용의 검토결과, 향후 시행계획 구성 시다음과 같은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먼저,5년단위의기본계획추진기간을아우르는종합적인성과지표와매년시행계획에서의추진(예정)사업의내용이다소상이한점,이에따라매년시행계획에서의추진(예정)사업의성과평가를수행하기어려운점등의한계점을노정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기본적으로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5년단위로추진되고있는형식을견지하여,5년단위의성과지표를구성하고,매년시행계획추진사업계획이이러한5년단위의성과지표와의유기적 정합성을 보다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5년 단위의기본계획추진기간내범국가적외생적요인(예컨대,코로나19등)이발생 하였을경우이를고려한연도별성과목표를수정하는등,(이전연도)성과에근거한이 후성과목표 수정, 보완과 같은 지속적인 환류 체계의 적용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앞선 논의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전 연도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향후 추진 계획 설정이 이

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는 바, 이러한 점에서 보완이 필요함,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 추진 단계에서 지속 수정 보완된 성과지표(보조지표)의 반영이 필요함.

- 연도별성과목표설정에 대한정보가부족한경향을 띠고 있음. 이에어떠한근거를 통해 연도별성과목표를 도출하고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정보가 보완될필요, 더 나아가연 도별성과목표 산출에 대한근거가 제시되고 있는 경우에도 근거의 논리 구조가 빈약한 특성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가 다른동일한과제명이 반복되고 있는 과제들이 구성되어 있어 외형상구분이 어려우므로, 과제번호 내지는 부제를 포함한 과제명을 통해 구분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가없는세부과제나성과지표해당없음으로제시된과제의경우및해당사유를 기재하고있다고하더라도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의성격을고려 하여 정량적인평가가가능할수 있도록하기 위한 종합적인 성과지표 및 연도별보완성 과지표의 구성이 필수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3-1>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제출자료 검토 종합

보완점	개선 필요사항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추진기간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성과지표와 매년 시행계획에서의 추진(예정)사업의 내용 상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형식을 견지하여,5년 단위의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매년 시행계획 추진 사업 계획이 이러한5년 단위의 성과지표 와의 유기적 정합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 			
외생적 요인에 대한 지속 환류	-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추진 기간 내 범국가적 외생적 요인 (예컨대, 코로나 19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고려한 연도별 성과목표를 수정하는 등, (이전연도) 성과에 근거 한 이후 성과목표 수정, 보완과 같은 지속적인 환류 체계 의 적용 필요			
이전 연도 사업의 한계점 보완 환류	 이전 연도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향후 추진 계획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이러한 점에서 다소 부족 함,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 추진 단계에서 지속 수정 보완된 성과지표(보조지표)의 반영 필요 			
연도별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정보 제시	- 어떠한 근거를 통해 연도별 성과목표를 도출하고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보완될 필요, 더 나아가 연도별 성과목표 산출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 경우에도 근 거의 논리 구조가 빈약한 특성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			
주관부처가 다른 동일한 과제명이 반복되고 있는 과제 구분	 과제번호 내지는 부제를 포함한 과제명을 통해 구분하여 구성할 필요 			
성과지표가 없는 세부과제나 성과지표 해당없음 과제 관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성과지표및 연도별보완 성과지표의 구성이필 수적으로 구성될 필요 			

자료: 부처별 제줄자료를 검토하여 저자 작성.

2. 신규사업

- 신규사업은예산규모변화를 중심으로제시함.보다구체적으로, 2021년시행계획과비교 하여볼때 2021년 사업 확정예산이 없는 반면, 2022년 제출예산이 존재하는 경우, 각 담당 부처의 확인을 받아 신규사업으로 정리함.
- 2021년 시행계획과 비교하였을 때, 2022년 시행계획의 신규사업은 총 12개임.

<표 3-2> 예산 기준 신규사업(이전연도인 2021년 예산 규모 0, 2022년 예산 존재 사업)

(단위: 백만 원)

부처	과제번호	과제명	2021년 확정예산(A)	2022년 제출예산(B)	증감
복지부	4-1-7}	영아기 집중투자(영아수당 도입)	0	545,234	545,234
복지부	4-1-7}	영아기집중투자(첫 만남 꾸러미 Ⅱ-생애초기 200만원)	0	550,275	550,275
복지부	4-3-나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가정형 보호 확대)	1,800	6,995	5,195
교육부	5-2-다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0	100	100
교육부	2-1-나	체계적인 생애경력개발 지원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 및 플랫폼 간 역량 강화	0	3,488	3,488
고용부	3-1-나	청년 고용지원 및 적합일자리 발굴(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일자리 발굴)	0	542,820	542,820
국토부	3-2-나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0	180,218	180,218
복지부	3-3-7}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청년저축계좌)	0	34,800	34,800
고용부	5-1-フト	기업의부담완화를 통한 계속고용 지원(계속고용장려금)	0	5,400	5,400
복지부	3-1-라	상병수당 도입	0	10,990	10,990
국세청	3-2-7}	사회적 기여의 인정 및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 개선		비예산사업	
행안부	4-3-나	선별적 지원 강화	6,600	750,000	743,000

자료: 부처별 제줄자료를 검토하여 저자 작성.

3. 2022년 시행계획 종료사업

○ 종료사업역시예산규모변화를중심으로제시함.보다구체적으로,2021년시행계획과비교하여 볼 때 2021년사업 확정예산이 있는 반면, 2022년 제출예산이 없는 사업의 경우를 중심으로, 각 담당부처 제출자료 및 담당자 확인을 받아 종료사업으로 정리함.

<표 3-3> 2022년 시행계획 종료사업

(단위: 백만 원)

-					
부처	과제번호	과제명	2021년 확정예산(A)	2022년 제출예산(B)	예산/ 비예산
고용부	1-1-마	임신·출산 근로자에 대한 보호 확대	비예산사업		
행안부	2-1-나	성평등 경영공표체 도입 (지방공기업및출자·출연기관의성별 고용현황 체계화)		비예산사업	
여가부	2-1-다	성별격차 해소 기반 강화(여성역량강화 사업운영)	281	0	예산
복지부	4-1-가	영아기 집중투자(첫 만남 꾸러미 I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임신시 100만원))		비예산사업	
교육부	4-2-다	아동의 놀이권 보장	80,000	0	예산
복지부	1-1-가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5,597,819	0	예산
행안부	4-3-다	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	14,000	0	예산
고용부	2-2-라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디지털 역량수준 향상·격차 해소 (퇴직인력 활용 고령자 디지털 교육)		비예산사업	
고용부	3-1-나	청년 고용지원 및 적합일자리 발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일자리 발굴)	1,516,602	0	예산
고용부	3-1-나	청년 고용지원 및 적합일자리 발굴	1,221,166	0	예산
여가부	4-1-7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비예산사업	
중기부	5-2-나	퇴직인력이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 기회 확대 (기술인력)	10,293	10,293	예산
고용부	5-3-フト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AI 학습 데이터)		비예산사업	
국토부	4-2-7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비예산사업	
국토부	4-2-나	인근 생활권 피폐화 방지		비예산사업	

자료: 부처별 제줄자료를 검토하여 저자 작성.

4. 국민체감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업

-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별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였음.
 - 우선적으로 정책 수혜대상자가 많아야 함.
 - 다음으로,전체적인사업의(예산)규모가작지않은사업의국민체감도가높을개연성이 있음.
 - 또한,사업내용이수당지급등정책수혜자의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는목적을띠고있는 경우 국민체감도가 높을 개연성이 있음.
- 상기논의를종합하여, 저출산, 고령사회분야 각각국민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사 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저출산분야는복지부3-1-가아동돌봄기관의공공성강화(국공립등공보육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책무성 강화, 안정적서비스 제공-영유아보육료, 민간기관투명성제고)(영유아보육료지원)교육부3-1-가아동돌봄기관의공공성강화(국공립등공보육확충,국공립어린이집책무성강화, 안정적서비스제공-영유아보육료, 민간기관투명성제고)(육아교육비보육료지원사업),복지부4-1-나아동수당제도개편검토(아동수당지급)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국토부4-1-라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주거지원확대(신혼부부주거비지원),국토부4-1-라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주거지원확대(신혼부부맞춤형임대주택공급),국토부3-2-나청년가구 대상공급확대 및 임차지원 사업 등은 예산 규모가 다른 사업에 비하여 크지만정책 수혜자의 범위가 신혼부부 및 청년 등에 한정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부동산시장의 불안정화 양상과 맞물려 실질적인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고령사회분야는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목적으로하고있는복지부1-1-가 저소득노인에대한소득보장강화(기초연금제도)의정책체감도가가장높을것으로보 이며,노인에게적합한일자리를제공하여노인의소득보충및활기찬노년기활동지원 을목적으로하고있는복지부1-1-나노인일자리사업을통한노년기소득보장사업 도 정책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임.
- 고령사회분야는 상대적으로 기초연금 사업등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 편중이 두드 러지게나타나, 상기 사업의 정책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됨.

<표 3-4> (참고) 2022년 시행계획 기준 예산 규모가 큰 사업

부처	과제번호	과제명	2021년 확정예산(A)	2022년 제출예산(B)	증감
복지부	1-1-フト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기초연금제도)	14,941,365	16,114,031	1,172,666
복지부	1-1-フト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기초연금제도)	3,916,689	3,878,584	-38,105
국토부	4-1-라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신혼부부 주거비 지 원)	9,900,000	9,530,000	-370,000
교육부	3-1-フト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국공립 등 공보육 확충, 국공 립어린이집 책무성 강화, 안정적 서비스 제공-영유아보육 료, 민간기관 투명성 제고)	3,916,771	3,829,046	-87,725
복지부	3-1-7}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국공립 등 공보육 확충, 국공 립어린이집 책무성 강화, 안정적 서비스 제공-영유아보육 료, 민간기관 투명성 제고)	3,395,239	3,202,771	-192,468
국토부	4-1-라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신혼부부 맞춤형 임 대주택 공급)	2,720,000	2,976,500	256,500
국토부	3-2-나	청년가구 대상 공급확대 및 임차지원	2,318,000	2,356,000	38,000
복지부	4-1-나	아동수당 제도개편 검토	2,219,455	2,403,949	184,494
복지부	4-1-나	아동수당 제도개편 검토	732,076	752,202	20,126
국토부	4-1-라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신혼부부 맞춤형 임 대주택 공급 확대)	2,113,083	1,951,583	1,618,814
국토부	4-1-라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신혼부부 맞춤형 임 대주택 공급)	1,740,500	1,530,330	-210,170
국토부	3-2-나	청년가구 대상 공급확대 및 임차지원	1,610,250	1,018,791	-591,459
복지부	3-1-フト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국공립 등 공보육 확충, 국공 립어린이집 책무성 강화, 안정적 서비스 제공-영유아보육 료, 민간기관 투명성 제고)	1,539,272	1,405,533	-133,739
고용부	3-3-7}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확대)	1,416,278	1,309,882	-106,396
복지부	1-1-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년기 소득 보장	1,330,679	1,442,195	111,516
복지부	1-1-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년기 소득 보장	1,285,641	1,389,310	103,669
고용부	1-1-나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부 모 모두 육아휴직 지원 신설·도입)	1,248,621	1,580,686	332,065
고용부	3-2-나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 및 확대를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828,647	1,202,551	373,904
복지부	3-1-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810,347	1,046,594	236,247
복지부	4-1-フト	영아기 집중투자(영아수당 도입)	760,779	508,163	-252,616
복지부	4-1-フト	영아기 집중투자(영아수당 도입)	378,112	234,331	-143,781
교육부	4-1-다	가구별 아동지원 강화(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759,095	917,995	158,900

자료: 부처별 제줄자료를 검토하여 저자 작성.

5.김우림(2021),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시된 저출산 영역의 부합도가 낮은 사업 관련 논의

- 김우림(2021)에서는저출산사업과관련하여,2021년시행계획을바탕으로돌봄노동분야 종사자 처우개선의 명목으로 협동조합종사자들과 일반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 대한지 원,인적자원개발이우수한중견,중소기업이나프로스포츠 단체에 대한지원,청년과상관 없는 창업기업이나특정산업분야 기업에 대한지원등이저출산사업으로서의부합도가 낮 다는 논의를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논의는 세부사업과제명과 정책 수혜자 간괴리에서 비 롯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가령, 청년 창업지원과 같은 세부사업의수혜자가 청년이 아닌 특정 산업분야 기업인 경우 등이 바로 그것임.
 - 구체적으로,관련성이 떨어진다고지적되는세부사업은대체적으로Ⅲ.모두의역량이고루발휘되는사회내 "1. 미래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에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파악됨. 다만 김우림(2021)에서 지적되고있는 저출산 대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제시되고 있는사업은 수혜자가 청년이 아니라도, 청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청년의 삶의 질을제고하는사업이라면 청년 지원과 관련된 저출산 분야에 (소위간접지원의 형식으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수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2-3-다돌봄노동분야종사자처우개선'사업의경우낮은고용안정성과한 명의돌봄 종사자가다수의아동을돌보는데따른피로도로인해아동에대한신체적·정서적학대문 제로이어지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노동자당적정 아 동수를 매칭해줄수 있다면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불안감을 경감시켜 줄수 있다는점에 서 저출산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이 존재함. 보육의 질이 낮다는 점은자녀를 갖기를 꺼리 게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기 때문에, 따라서 돌봄노동분야 종사자처우 개선이 저출 산 대책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저출산 정책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결과일수도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3-1-다청년창업지원'사업의경우창업기업이나특정산업분야에 대한지원인경우 관련성이낮다고평가하고있는데,경제구조변화로민간기업에서의고용창출력이현저 하게 둔화된 상황에서 창업이 갖는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저출산 문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서 고용 문제와 양극화를 생각한다면, 창 업은 저출산 완화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 중 하나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저출산의원인과대응정책의목표를얼마나좁게(혹은넓게)보느냐에따라저출산분야 와부합도가낮다고 판단하는 논리가 각각 다를 수 있음. 즉, 저출산 대응을 단지 출산율 제고뿐만아니라인구변화의과급효과에대한대응의관점에서본다면, 여성고용을포함

한고용 제고와 인적자본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도 광의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포함될 수 있음.

- 저출산관련 정책은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인 기혼 부부(married couple), 출산이전에 혼인을 고려하고 있는 미혼 남녀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누리는 출산으로 인한 편익과이들에게 발생하는 출산에 따른 비용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은 혼인 이후 연달아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sequential)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를 기혼부부의 후 남녀로 한정하여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임
- 돌봄노동분야는저출산고령사회에서공통적으로다루어져야하는사회정책적이슈임은 분명함. 다만, '돌봄'에 대한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돌봄노동분야 종사자 권리 보호나 종사자 처우개선에 있어서 돌봄종사자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걸맞게 사업대상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보완.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청년창업지원정책과관련하여,청년창업과관련한지원정책이라는사업이지만실제로는 일반창업기업을지원하는내용이대부분이거나게임개발기업을지원하는사업등,실제 '청년창업지원'과는관련성이 없어보이는일반창업지원사업이일부포함되어 있음. 저 출산대책의일환으로청년스타트업기업을지원하는것은바람직하나저출산대책이라 는계획으로 사회적지지와 합의를얻을 수 있도록사업대상에 대한고민이 심도 있게 이 루어져야 할 것임.



제 4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 2022년 시행계획 예산 분류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분야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 검토 제2절 2021년, 2022년 시행계획 예산 분류 결과

제 **4** 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 2022년 시행계획 예산 분류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분야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 검토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 분류와 관련된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즉,예산분류기준이다소일관적이지못하고모호한특성(예컨대,정책영역과지원방식이 동일한 위계에서 혼재되어 있는 특성),
- 또한,이러한 모호한 기준에 의하여 일부 예산 분류 결과가 타당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특성
- 아울러, OECD의 가족지출(family expenditure) 범위를 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예산 구성과 관련된 사항이 바로 그것임.
- 이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지난2021년6~11월에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위탁하여수행된"2020년도저출산고령사회정책성 과평가연구"에서OECDSOCX의9개정책영역((표4-1)및지원방식에따른개선안(1), (2)을 도출하였음(표4-2, 표4-3참조).

<표 4-1> OECD 사회정책 분야 지원유형별 공공, 민간 의무 프로그램 분류

노인	가족
현금 급여 연금 조기퇴직연금 기타 현금 급여	현금 급여 가족수당(양육수당) 출산 및 육아휴직 기타 현금 급여
현물 급여 거주 돌봄/재가 서비스 기타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조기 아동 교육 및 보육(ECEC) 재가 서비스 등
유족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현금 급여 연금 기타 현금 급여	공공고용 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s:PES) 관리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
현물 급여 장례비용 기타 현물 급여	보호, 지원 고용 및 자활 창업 지원 스타트업 인센티브
무능력 관련 급여	실업
현금 급여 장애연금 산재연금 산재유급휴가 기타 유급휴가	현금 급여 실업수당/퇴직금 해고(조기퇴직) 관련 급여 현물 급여
기타 현금 급여	주거
현물 급여 거주 돌봄/재가 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현물 급여 주거 지원 기타 현물 급여.
보건	기타 사회정책
현물 급여	현금 급여 소득 유지(소득 보전) 기타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사회 부조 기타 현물 급여

자료: OECD(2019). The OECD SOCX Manual 2019 Edition. A guide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https://www.oecd.org/social/soc/SOCX_Manuel_2019.pdf, p. 16에서 2021.10.1.에 인출한 자료를 번역하여 제시함.; 장인수 외(2021), p.225에서 재인용함.

- 개선안(1)은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예산 분류 체계 구분 기준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 첫번째(step)기준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각각의 분야별에 대하여 OECD SOCX의 정책 영역 범주를 적용하고,
- 두번째(step)기준으로 현금,서비스지원방식인경우직접,그외의경우간접으로구분하는 소위 지원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 두 번째 안은 우리나라의 정책 추진 환경 실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내 정책영역을 준용하고 지원방식은 첫 번째 안과 동일함.

<표 4-2> 저출산·고령사회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1안)

저출산 분야	고령사회 분야	지원방식	직접/간접
정책	영역	시편하다	역입/간입
		현금	직접
보건	"노인"	서비스	行用
		그외	간접
		현금	직접
"가족"	보건	서비스	역접
		그외	간접
		현금	2) 24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주거	서비스	직접
		그외	간접
		현금	직접
실업	기타 사회영역	서비스	行省
		그외	간접
		현금	직접
주거		서비스	
		그외	간접

주: 1) OECD SOCX 정책 영역 범주를 준용한 것임.

<표 4-3> 저출산·고령사회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2안)

저출산 분야	고령사회 분야	지원방식	직접/간접	
정책		시편하다	역합/신합	
		현금	ગો અ	
근로환경(여건)	소득보장	서비스	직접	
		그외	간접	
		현금	지정	
보육/돌봄	보건	서비스	719	
		그외	간접	
		현금	ત્રો સ્વે	
출산/양육/보건	돌봄	서비스	9省	
		그외	간접	
		현금	ગો અ	
	주거	서비스	식십	
		그외	간접	
		현금	지정	
	기타 사회정책	서비스	气省	
		그외	간접	
정책	영역 2	지원방식	직접/간접	
		현금	지정	
청소년	노인	서비스	719	
		그외	간접	
		현금	지정	
청년	신중년	서비스	직접	
		그외	간접	
		현금	지저	
여성		서비스		
		그외	간접	

주: 1) 정책 영역 1은 2021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분야 정책 영역 세부 범주를, 정책 영역 2는 2021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내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분야 정책 영역 세부 범주를 각각 준용한 것임.

²⁾ 세제 지원은 현금 지원으로 구분함.

자료: 장인수 외(2021), p.227의 표를 재인용함.

²⁾ 세제 지원은 현금 지원으로 구분함.

³⁾ 정책 영역 2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출산, 고령사회 분야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현금, 서비스가 아닌 그 외의 간접 지원일 것으로 이해됨.

자료: 장인수 외(2021). p.227의 표를 재인용함.

- 1안은 OECD SOCX의 가족 지출 범주에 따른 국제 비교가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정책 과제 추진 방향 도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향후 이를 활용하여 예산 분류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하고자 하였으나,
- 상기정책 영역 내포함되는과제와 제4차기본계획(시행계획) 내세부사업이 상이하여 예산 분류 체계 적용의 의의가 저하되는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함.
- 가령, OECD SOCX의 주거 영역 내사업과 기본계획(시행계획) 내사업 중 일치하는 사업은 주거급여 관련 사업이며, 저출산 분야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거 관련 정책사업은 1안의 주거 영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임.
- 이외에도세부적인측면에서 각각의 개별OECD SOCX 영역내 사업과시행계획사업이상 이한(대부분개별OECD SOCX 영역 내시행계획사업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 한계점이 노 정되어 1안을 온전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함.
- 이에, 저출산및 고령사회 각각의 분야별로 대표적인 영역이자 국제비교 추진이 불가피한 "가족(family)"과 "노인(노령, old)"영역만 OECD SOCX를 준용하고, 그 이외의 사업은 제 4차기본계획을 기본적으로 준용한 우리나라 정책분야로 정책 영역을 구분한 2안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절충안을 구성함(표 4-4 참조).
- 우리나라 정책 영역은 공통적으로 보건/주거/고용/교육/기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저출산은 가족, 고령사회는 노인 영역을 각각 설정할 수 있음. 이는 2안의 정책 영역을 보다 일반화시킨 특징으로 이해됨.
- 상기 절충안에서의 "가족", "노인"은 OECD SOCX의 가족과 노인 범주와 제4차 기본계획 내 "가족관련", "노인 관련" 사업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됨. 이에 일치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기타범주에 포함됨. 즉, 영역의가족(OECD), 노인(OECD) 범주는제4차기본계획(시행계획) 내 사업 중 OECD SOCX의 가족, 노인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만을 구분한 것이므로, 국제비교 시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한 특징이 있음.

<표 4-4> 저출산·고령사회 예산 분류	- 체계	개선안(3안:	1+2안 설중안)
------------------------	------	---------	-----------

정책 영역	지원방식	직접/간접
가족(OECD)	현금	고) 자
노인(OECD)	현물, 서비스	직접
	현금	의 기
보건	현물, 서비스	직접
	그외	간접
	현금	2.2
주거	현물, 서비스	직접
	그외	간접
	현금	-1-1
고용	현물, 서비스	직접
	그외	간접
	현금	
교육	현물, 서비스	직접
	그외	간접
	현금	
기타	현물, 서비스	직접
	그외	간접
기타(가족)	그외	간접
기타(노인)	그외	간접

주:1) 가족(OECD), 노인(OECD)는 각각OECD SOCX의 가족과 노인 범주와 제4차기본계획 내"가족 관련", "노인 관련" 사업이 일 치하는 경우를 포함함.

- 3안의 특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OECD)", "노인(OECD)"은 각각OECD SOCX 정책 영역 범주를 준용⁷⁾한 것이며, 그 이외의 영역은 2021년시행계획 정책 영역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책 영역을 구분한 것임. 가족/노인 정책영역임에도 불구하고 OECD SOCX의 가족, 노인에 해당되지 않는사업은 "기타" 범주의 가족, 노인의 별도 범주로 구성함. 이는 OECD SOCX는 비예산을 제외하며, 현금(cash)와 현물(in kind)로 구분하고 있는 특징에 기인함. "기타" 범주는 각분야별 해당 범주(가족(OECD)/노인(OECD), 가족/노인,보건, 주거, 고용, 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세부사업들을 구분하기 위한 범주임.
- 현금, 현물, 서비스(직접)은 상기 형태로수혜자가 직접적으로수혜하는 경우이며, 그이외 의경우는 간접임. 이러한 직접 지원 방식은 OECD SOCX의 구분과 대체적으로 일치함.

²⁾ 기타(가족), 기타(노인)은 각각 OECD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가족, 노인 예산의 성격을 띠는 범주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⁷⁾ 이는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이 공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신규과제의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OECD 공공 사회복지지출 분류 체계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분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책영역과 지원방식에 따른구분은 완전히 배타적이기 때문에, 특정개별사업은 두 개 이상의 범주에 동시에 분류될 수 없으며, 오직 한 개의 범주에만 포함됨.
- 지금까지의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명확한예산분류 체계구축을 도모하기 위하여(2022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및 핵심성과지표개발연구에서수행될 2022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내예산분류 제시를 위하여), 2021년시행계획분야/영역별세부사업에 대하여 상기 3안을 적용해 보았음.

제2절 2021년, 2022년 시행계획 예산 분류 결과

- 1. 2021년 시행계획 분야별 예산분류체계 적용 결과
 - 2021년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의 4가지 영역 내 세부사업 총 356개 72.679.857백만 원(약 72.7조 원)(표 3 참조)을 상기 3안을 활용하여 분류하였음.

<표 4-5> 추진분야별 2021년 시행계획 예산 규모

(단위: 조 원, %)

분야 구분	2021년 시행계획 예산 규모
합계	72.7(100.0)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36.6(50.3%)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23.5(32.4%)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9.7(13.3%)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2.9(4.0%)

자료: 대한민국정부(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p.10의 표를 재인용함.

- 2021년시행계획 세부사업에 대하여 3안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4-6, 4-7 참조
- 구체적으로,가족(OECD)범주는약17.99조원으로전체예산의24.75%,노인(OECD)범주는 약 18.91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26.02%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각영역별기타(가족),기타(노인)범주는제4차시행계획기준으로가족및노인관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OECD SOCX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며, 이는 각각 전체 예산의 0.27%,1.47%인것으로 나타남. 가족과 노인범주를 제외한이외의범주는모두우리나라 정책 영역을 준용한 것임.

<표 4-6> 2021년 시행계획 분야별 3안 적용 결과

(단위: 백만 원, %)

구분	가족 (OECD family)	노인 (OECD old)	보건	주거	고용	교육	기타	기타 (가족)	기타 (노인)	합계
예산	17,987,427	18,909,534	608,080	23,219,681	9,287,238	853,283	545,114	199,827	1,069,673	72,679,857
비중	24.75	26.02	0.84	31.95	12.78	1.17	0.75	0.27	1.47	100.00

- 주:1) 가족(OECD), 노인(OECD)는 각각OECD SOCX의 가족과 노인 범주와 제4차 기본계획 내 "가족 관련", "노인 관련" 사업이 일 치하는 경우를 포함함.
- 2) 기타(가족), 기타(노인)은 각각 OECD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가족, 노인 예산의 성격을 띠는 범주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7> 2021년 시행계획 분야별 3안 적용 결과: 범주별 지원방식 구분

(단위: 백만 원, %)

정책 영역	지원방식 구분	예산	비중
가족(OECD family)	직접	17,987,427	24.75
노인(OECD old)	직접	18,909,534	26.02
보건	직접	412,658	0.57
工行	간접	195,422	0.27
	직접	9,362,931	12.88
주거	간접	13,856,750	19.07
7.0	직접	7,362,245	10.13
고용	간접	1,924,993	2.65
70	직접	175,789	0.24
교육	간접	677,494	0.93
715	직접	248,111	0.34
기타	간접	297,003	0.41
기타(가족)	간접	199,827	0.27
기타(노인)	간접	1,069,673	1.47
 합계	-	72,679,857	100.00

주:1) 가족(OECD), 노인(OECD)는 각각OECD SOCX의 가족과 노인 범주와 제4차기본계획 내 "가족 관련", "노인 관련" 사업이 일 치하는 경우를 포함함.

○ 범주별지원방식별예산분류결과와 관련하여, 고용범주의경우직접예산이 간접예산에 비하여 약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난반면, 주거, 교육범주는 대체적으로 간접비중이 직접비 중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

²⁾ 기타(가족), 기타(노인)은 각각 OECD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가족, 노인 예산의 성격을 띠는 범주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서비스(직접지원)의경우 특정세부사업이서비스를지원하는경우 및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직접 범주에 포함하였음. 다만, 시설 및 인프라 구축은 간접 범주에 포함하였음. 이러한 지원 방식 구분은 OECD SOCX의 현금, 현물지원(직접지원)과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일치하며 전체 예산규모 변 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주거영역과관련하여영역1."국토교통부4-1-라.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주거지원확대 (신혼부부주거비지원)"과제의경우주거지원기타현물급여일수있지만,장기기간이후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간접으로 구분하였음.이는,영역3."국토교통부3-2-나.청년가 구대상공급확대 및임차지원"의경우에도 마찬가지임.이는주거지원관련사업은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즉,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논의가 필요함.
- 추가적으로, 3안 적용 결과에 따른 영역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음(표 4-8 참조).

<표 4-8> 2021년 시행계획 분야별 3안 적용 결과에 따른 영역별 주요 과제

저출산분야	과제명
가족 (OECD family)	3-1-가.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국공립유치원 지속 확충, 누리과정 지원, 민간기관 투명성 제고) 4-1-가. 영아기 집중투자(영아수당 도입), 4-1-나. 아동수당 제도개편 검토
노인 (OECD old)	1-1-가.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기초연금제도)
보건	2-3-가.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강화 3-3-나. 청년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건강보장
주거	4-1-나.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확대 4-1-라.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4-1-라.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고용	1-1-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년기 소득 보장 3-1-나. 청년 고용지원 및 적합일자리 발굴(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일자리 발굴) 3-2-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및 확대를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3-3-가.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교육	1-2-가.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 1-2-다. 미래형 교육에 부합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혁신 3-2-가. 초등교육 혁신을 통한 충분한 교육 제공(교육공간 혁신)
기타	3-3-가.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4-1-가.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지역대학 역할 강화) 4-3-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
기타(가족)	4-2-다. 아동의 놀이권 보장(2), 4-3-나.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가정형 보호 확대)
기타(노인)	3-1-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주:1) 가족(OECD), 노인(OECD)는 각각OECD SOCX의 가족과 노인 범주와 제4차기본계획 내 "가족 관련", "노인 관련" 사업이 일 치하는 경우를 포함함.

²⁾ 기타(가족), 기타(노인)은 각각 OECD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가족, 노인 예산의 성격을 띠는 범주를 의미함. 자료: 부처별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2022년 시행계획 분야별 예산분류체계 적용 결과

○ 2022년시행계획의분야별예산분류결과,가족(OECD family),노인(OECD old) 범주의 예산이 각각 24.38%, 25.39%이며, 2021년 결과와 유사하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주는 주거 범주(30.04%)로 나타남.

<표 4-9> 2022년 시행계획 분야별 3안 적용 결과

(단위: 백만 원, %)

구분	가족 (OECD family)	노인 (OECD old)	보건	주거	고용	교육	기타	기타 (가족)	기타 (노인)	합계
예산	19,244,404	20,039,201	685,214	23,708,710	8,302,879	3,875,897	1,468,691	495,409	1,114,394	78,934,798
비중	24.38	25.39	0.87	30.04	10.52	4.91	1.86	0.63	1.41	100.00

주: 1) 가족(OECD), 노인(OECD)는 각각 OECD SOCX의 가족과 노인 범주와 제4차 기본계획 내 "가족 관련", "노인 관련" 사업이 일 치하는 경우를 포함함.

○ 2022년 시행계획의 분야별 예산을 범주 및 지원방식으로 분류한 결과, 대체적으로 주거, 교육, 기타 모두 간접 지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고용의 경우 직접 예산이 약 6.03조 원, 간접 예산이 2.28조 원으로 직접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²⁾ 기타(가족), 기타(노인)은 각각 OECD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가족, 노인 예산의 성격을 띠는 범주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10> 2022년 시행계획 분야별 3안 적용 결과: 범주별 지원방식 구분

(단위: 백만 원, %)

			(ਦ ।) ਜ ਦ ਦ, ///
정책 영역	지원방식 구분	예산	비중
가족(OECD family)	직접	19,244,404	24.38
노인(OECD old)	직접	20,039,201	25.39
보건	직접	401,798	0.51
土乜	간접	283,416	0.36
	직접	10,803,919	13.69
주거	간접	12,904,791	16.35
 고용	직접	6,027,560	7.64
工品	간접	2,275,319	2.88
	직접	1,169,375	1.48
교육	간접	2,706,522	3.43
기타	직접	215,599	0.27
7 [-]	간접	1,253,092	1.59
기타(가족)	간접	495,409	0.63
기타(노인)	간접	1,114,394	1.41
합계	_	78,934,798	100.00

주:1) 가족(OECD), 노인(OECD)는 각각OECD SOCX의 가족과 노인 범주와 제4차 기본계획 내 "가족 관련", "노인 관련" 사업이 일 치하는 경우를 포함함.

²⁾ 기타(가족), 기타(노인)은 각각 OECD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가족, 노인 예산의 성격을 띠는 범주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3안 적용 결과에 따른 영역별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이 2021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특히,가족(OECDfamily)범주는3-1-가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국공립등 공보육확충,국공립어린이집책무성 강화,안정적서비스제공-영유아보육료,민간기관투명성 제고), 4-1-나 아동수당 제도개편 검토 과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할 수 있음. 노인 (OECDold)범주는1-1-가저소득노인에대한소득보장강화(기초연금제도)가주요과제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1> 2022년 시행계획 분야별 3안 적용 결과에 따른 영역별 주요 과제

저출산분야	과제명
가족 (OECD family)	3-1-가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국공립 등 공보육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책무성 강화, 안정적 서비 스 제공-영유아보육료, 민간기관 투명성 제고) 4-1-나 아동수당 제도개편 검토
노인 (OECD old)	1-1-가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기초연금제도)
보건	2-3-가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강화 3-3-나 청년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건강보장 3-4-나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주거	4-1-가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고령자 매입임대 공급) 4-1-나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확대 4-1-라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4-1-라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고용	1-1-나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중소기업 지원금 확대) 1-1-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년기 소득 보장 3-1-나 청년 고용지원 및 적합일자리 발굴(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일자리 발굴) 3-2-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및 확대를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3-2-다 지역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교육	1-2-다 미래형 교육에 부합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혁신 2-2-라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디지털 역량수준 향상·격차 해소(디지털 격차 해소) 2-3-나원하는 시기에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유급휴가 훈련 지원, 일학습 순환제) 4-1-다 가구별 아동지원 강화(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타	3-3-가.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4-1-가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지역대학 역할 강화) 4-3-나 선별적 지원 강화 4-3-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
기타(가족)	3-1-나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유치원: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성 제고, 저소득층 지원, 서비스 질 제고)
기타(노인)	3-1-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주:1) 가족(OECD), 노인(OECD)는 각각OECD SOCX의 가족과 노인 범주와 제4차 기본계획 내 "가족 관련", "노인 관련" 사업이 일 치하는 경우를 포함함.

²⁾ 기타(가족), 기타(노인)은 각각 OECD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가족, 노인 예산의 성격을 띠는 범주를 의미함. 자료: 부처별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3안 적용 결과에 따른 2021년. 2022년 각 분야별 범주에 대한 예산 비중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는주거,가족(OECD family)의 경우2021년에 비하여2022년모두 예산규모가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전체분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주거 영역의 경우 2021년의 31.95%에 비하여2022년에는 30.04%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가족(OECD family) 영역역시2021년24.75%에서24.38%로 감소하였음.
- 고용 영역은 2021년에 비하여 2022년 예산 규모도 감소하였으며, 예산 비중도 감소한 반면, 교육 영역은 예산 규모, 비중이 모두 2022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 기타 영역역시 예산 규모, 예산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OECD old) 영역의 경우 2021년에 비하여 약1.13조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은 0.6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기타(가족)과기타(노인)의예산규모는모두증가한반면,비중은기타(가족)이증가하고, 기타(노인)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2> 2021년, 2022년 시행계획 범주별 예산 규모, 비중

(단위: 백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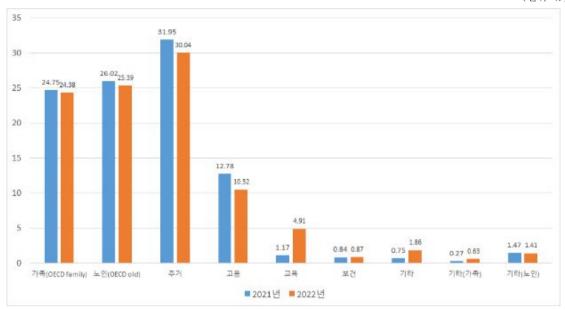
구분	202	?1년	202	22년
계	72,679,857	100.00	78,934,798	100.00
가족(OECD family)	17,987,427	24.75	19,244,404	24.38
노인(OECD old)	18,909,534	26.02	20,039,201	25.39
주거	23,219,681	31.95	23,708,710	30.04
 고용	9,287,238	12.78	8,302,879	10.52
교육	853,283	1.17	3,875,897	4.91
보건	608,080	0.84	685,214	0.87
기타	545,114	0.75	1,468,691	1.86
기타(가족)	199,827	0.27	495,409	0.63
기타(노인)	1,069,673	1.47	1,114,394	1.41

주:1) 가족(OECD), 노인(OECD)는 각각OECD SOCX의 가족과 노인 범주와 제4차기본계획 내 "가족 관련", "노인 관련" 사업이 일 치하는 경우를 포함함.

²⁾ 기타(가족), 기타(노인)은 각각 OECD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가족, 노인 예산의 성격을 띠는 범주를 의미함. 자료: 부처별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1] 2021년, 2022년 시행계획 각 범주별 예산 비중

(단위:%)



주:1) 가족(OECD), 노인(OECD)는 각각OECD SOCX의 가족과 노인 범주와 제4차 기본계획 내 "가족 관련", "노인 관련" 사업이 일 치하는 경우를 포함함.

2) 기타(가족), 기타(노인)은 각각 OECD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가족, 노인 예산의 성격을 띠는 범주를 의미함. 자료: 부처별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제 5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의 방향성

제1절 개요 제2절 기존 핵심성과지표 검토 제3절 핵심성과지표의 원칙과 안

제 5 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의 방향성

제1절 개요

-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성과지표 개발의 필요성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및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2020)의경우핵심성과지표(각28개,13개)를설정하고5년간의수치를산출하여 평가하였음.
 - 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합계출산율및노인빈곤율과같은수치중심의성 과를 지양하고 삶의 질, 성평등과 같은 가치 중심의 목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핵심성 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음.
 - 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중심으로우리나라의저출산·고령사회의현황을모니 터링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 발굴 필요
 - 변화된패러다임을반영하는핵심성과지표를설정함으로써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방법
 - 선행연구 등 문헌 검토
 - 「2020년도저출산·고령사회정책성과평가」등저출산·고령사회정책성과평가관련 보고서에서 제시된 지표 검토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 성과지표 및 핵심성과지표 검토
 - 해외 사례 및 국제비교 가능 지표 검토
 - 관련 회의 자료 등 내부자료 검토
 - 통계 자료 및 국가지표체계 등
 - 전문가 의견 수렴
- □ 핵심성과지표 개발 단계
 - 문헌 검토를 통해 적절한 지표 목록 작성
 - 핵심성과지표 기본 방향성(원칙) 설정

- 제3차기본계획핵심성과지표의검토를통해지표삭제·수정·보완및선행연구등문 헌 검토를 통해 도출된 지표를 제4차 기본계획 영역에 재배치
- 제4차 기본계획 25개 영역(4대 전략의 5대 영역)별 핵심성과지표 구성

제2절 기존 핵심성과지표 검토

-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성과지표 부재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및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경우핵심성과지표(각28개,13개)를설정하고5년간의수치를산출하여평가하였음.
 - 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합계출산율및노인빈곤율과같은수치중심의성 과를 지양하고 삶의 질, 성평등과 같은 가치 중심의 목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핵심성 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음.
- □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성과지표 개발의 필요성
 - 제4차기본계획을중심으로우리나라의저출산·고령사회의 현황을모니터링하고, 향후정 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의 발굴이 필요함.
 - 변화된패러다임을반영하는핵심성과지표를설정함으로써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성과지표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총 230여 과제들 중 일부 중요 과제들을 선정하여 '핵심과제'로관리하였고, 이러한 핵심과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중요 과제 의 성과지표를 핵심성과지료로 설정하여 연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였음.
 - 핵심성과지표는 저출산 분야, 고령사회 분야 및 성장동력 분야의 중분류 및 소분류별로 설정되었음.
 - 최종적으로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저출산분야18개,고령사회분야17개, 성장동력 분야 10개로 총 45개 핵심성과지표가 포함됨.

〈표 5-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과제 및 핵심과제 성과지표

분야	핵심과제	성과지표
E 41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 사용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유연근로제 확산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율(%)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가족친화인증 기업수(개소)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천명)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임신·분만 취약지역수(개소)
저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분야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율(%)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보육시설 평가인증률(%)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율(%)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연계건수(만건)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율(%)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천명)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아동안전사고 사망률(10만명 당 명)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고령자 고용연장	고령자(55~64세 취업자수) 고용률(%)
	_	50세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율(%)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가입율(%)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퇴직연금 가입율(%)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45~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노후설계 기반 조성	50대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노인일자리 창출 수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공적소득보장률(%)
고령사회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
분야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노인인구대비 인정률)(%)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율(60세 이상)(%)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노인자원봉사 등록자 수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노인문화예술교육 경험율(%)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자용임대주택공급비율(총임대주택대비)(%)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노인교통사망률(노인10만명 당)
	보행환경 조성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보호강화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 수
	학대노인 보호강화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수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 고용률(%)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업률(%)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E-1~E-7) 및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된 인력 규모(명)
성장동력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분야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참여율(%)
E-1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산업재해율(%)
	금융분야 제도개선	국고채평균잔존만기(년)
	미래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우수제품지정품목개수(개)
	국내 수요기반 확충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수(개)

자료: 대한민국정부(2011). 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성과지표의 평가
 - 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각분야별핵심과제,핵심과제의성과지표(핵심성과지표),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평가방법)2013년저출산고령사회정책성과평가(이삼식외,2014)에서는각분야전 문가 25명을 대상으로 핵심성과지표를 평가하였음.
 - 성과지표는각성과지표에대해'잘모르겠음'을제외하고매우부적절(1점)~매우적절 (5점)'으로 평가한 결과임.
 - 저출산,고령사회,성장동력분야의핵심과제,핵심과제의성과지표,핵심성과지표에대 한 평가 결과는 다음의 표에 제시함.
 - 저출산분야핵심과제의성과지표를평가한결과는보통(3점)에서적절(4점)한수준으로평가되었음.보통(3.0)수준으로평가된지표는단순투입(input)지표로서'신혼부부주택지원비율'과'청소년시설이용청소년수'였으며적절(4점)이상의수준으로평가된지표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이용률(4.2점),''보육시설평가인증률(4.1점),' '산모신생아 도우미수혜율(4.0점)'로 나타남.

<표 5-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 핵심과제의 성과지표 및 지표 평가 결과

핵심과제	성과지표	평균1)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 사용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3.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4.2
유연근로제 확산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율(%)	3.2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	3.5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가족친화인증 기업수(개소)	3.3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3.7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천명)	3.0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임신·분만 취약지역수(개소)	3.5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4.0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율(%)	3.9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보육시설 평가인증률(%)	4.1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율(%)	3.7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연계건수(만건)	3.5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	3.9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율(%)	4.0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천명)	3.0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아동안전사고 사망률(10만명 당 명)	3.7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3.6

자료: 이삼식, 이지혜, 김세진(2014).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 고령사회분야핵심과제의성과지표를평가한결과는대체로보통(3점)에서적절(4점)한수준으로평가되었음. 가장낮게평가된지표는 '노인일자리 창출수(3.1점)'과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수'였으며가장높게평가된지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수혜율(4.1점)'이고다음으로높게평가된지표는 '45~80세미만건강검진수검률(4.0점)'로 나타남.

<표 5-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사회 분야 핵심과제의 성과지표 및 지표 평가 결과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평균1)
고령자 고용연장	고령자(55~64세 취업자수) 고용률(%)	3.5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회	50세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율(%)	3.6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가입율(%)	3.8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퇴직연금 가입율(%)	3.9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45~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4.0
노후설계 기반 조성	50대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	3.3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노인일자리 창출 수	3.1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공적소득보장률(%)	3.9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	3.9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노인인구대비 인정률)(%)	4.1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시업 활성호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율(60세 이상)(%)	3.8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노인자원봉사 등록자 수	3.3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노인문화예술교육 경험율(%)	3.5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자용임대주택공급비율(총임대주택대비)(%)	3.2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	노인교통사망률(노인10만명 당)	3.5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보호강화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 수	3.7
학대노인 보호강화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수	3.1

자료: 이삼식, 이지혜, 김세진(2014).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 성장동력분야핵심과제의성과지표를평가한결과는대체로보통(3점)이상에서적절 (4점) 미만의 수준으로평가되었으나 저출산 분야와 고령사회 분야와 비교했을 때 보다낮게평가되었음. 가장낮게 평가된지표는 '국고채평균잔존만기(년)'으로 2.9점에 불과하였으며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산업재혜율(4.0점)'로 나타남.

<표 5-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성장동력 분야 핵심과제의 성과지표 및 지표 평가 결과

핵심과제	성과지표	성과지표 평가점수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 고용률(%)	3.8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업률(%)	3.5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E-1~E-7) 및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 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된 인력 규모(명)	3.3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3.4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참여율(%)	3.6

핵심과제	성과지표	성과지표 평가점수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산업재해율(%)	4.0
금융분야 제도개선	국고채평균잔존만기(년)	2.9
미래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3.6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우수제품지정품목개수(개)	3.4
국내 수요기반 확충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수(개)	3.0

자료: 이삼식, 이지혜, 김세진(2014).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성과지표
 - 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경우총13개의 핵심성과지표를설정하여평가하고점 검하였음
 - 세부과제들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핵심성과지표와각지표의2020년최종목표 치를설정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도별로 산출하고 시계열적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함

<표 5-5>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

관련 중영역(소영역)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임신·출산 사회책임시스템 구축)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청년고용활성화)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실천 여건 강화)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맞춤형 보육)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교육개혁 추진)
○노후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강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고령자 안전 및 권익보장)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여성 고용 활성화)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중·고령자 근로기반 확대)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고령친화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대한민국정부, p.44

- 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핵심지표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이소영, 백혜연, 변수정, 장인수, 2018)
 - (신혼부부임대주택수혜율)매년신규형성되는신혼부부수대비공공임대주택을지원 받은 신혼부부수의 비율을 의미하며 공공임대주택지원물량은 국민임대, 5년·10년 임 대, 행복주택등을 모두 포함한 물량임. 국토부의 행정자료와 통계청의 혼인 이혼 통계 를 활용하여 산출됨.
 - (임신유지율)임신유지율은임신이종결되었을 때,종결된임신결과중사산,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을 통해 임신소모가 되지 않은 비율을 의미함. 즉, 모든 임신은 정상출산,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사산으로 종결되며, 이중 정상 출산으로 종결된 비율임. 해당 지표는3년마다 수행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복지 실태 조사」를 활용하여 산출됨
 - (청년고용률)만15~29세청년인구중에서취업자가차지하는비율을의미함.이는통계 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산출됨.
 - (전체육아휴직자중남성비율)만8세이하또는초등학교2학년이하자녀를둔근로자 가사업주에게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육아휴직을 이용한자 중남 성의 비율을 의미함. 고용부의 고용보험 DB를 통해 산출됨.
 - (국공립등 믿고 맡길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전체어린이집⁸⁾ 이용아동 중국 공립, 직장,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을 의미하며 매년 12월 말기준으로 산출되 는 복지부의 「보육통계」를 활용하여 산출됨.
 - (근로자1인당연간근로시간)OECD가입국중최장수준인한국근로자의지나치게긴 노동시간 및 노동몰입적 사회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지표로 고용노동부의 자체 산출자료를 근거로 산출됨.
 - (사교육비부담)초등학생,중등학생,고등학생을대상으로한사교육비의총합을의미함 며 통계청에서 실시한 「초중고 사교육비조사」를 통하여 산출됨.
 - (노인상대빈곤율)소득이중위소득의50%미만에해당하는노인의수가전체노인의수 에샤자하는비율을의미하며노인상대빈곤율은「가계동향조사」와「농가경제조사」를 활용하여 산출됨.
 - (기대수명과건강수명의격차)기대수명이란0세의출생아가앞으로생존할것으로기대 되는평균생존연수(0세기대여명)을말하며평균수명과동일한개념으로사용하며건강 수명 (disability adjusted life expectancy)이란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몸 이 아픈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이라고도 함. 건강수명은 '평

⁸⁾ 어린이집 유형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됨.

균수명'에 '수명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평균수명에서 병이나부상등의 '평균장애기간'을 차감한 기간임. 즉, 질병의 경중에 따라 건강이 좋지 않았던 햇수를 산출, 이를 전체 평균수명에서 뺀 것으로 사망 시까지 순수하게 건강한 삶을살았던 기간을 말함. 단순히얼마나 오래살았는가보다실제로 건강하게산 기간이 어느정도인지를나타내는 건강지표로선진국에서는 평균수명보다 훨씬 중요하게 인용되고있음. 평생 동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지낸 와병일수에 의해서 발생함으로 이 격차가 줄어들수록 질병이나 부상의 고통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이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함. 기대수명은 통계청에서 연령별 정지인구와 사망자, 생존자자료를이용하여산출한연령별기대여명에서 0세기대여명자료를활용하고,건강수명(유병기간제외기대수명)은통계청사회조사의유병기간을이용하여장애유병률을산출하며, 생명표의 정지인구를 이용하여 유병기간 제외하여 기대수명이 산출됨.

- (노인교통사망율)65세이상노인인구10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를의미함.교통사고 통계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하여 산출됨.
- (여성고용률)여성생산가능인구(만15~64세)중취업자비율을의미하며,통계청의경 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산출됨.
- (고령자고용률)고령자의노동시장참여상태를나타내는지표로서,고령자가운데일하고있는고령자가얼마나되는가를의미하며,전체고령자(55~64세)가운데취업상태에 있는고령자비율로측정됨. 통계청에서 매월약3만가구를 대상으로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로 산출됨.
- (고령친화산업비중)GDP대비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2조의범위에해당하는고령친화산업 중현재시장규모추계등이가능한산업의총합에대한비율을의미함.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전산업으로산업표준분류로도구분되지않고,범위도명확하지않다는 한계를가지며자료가존재하지않고산출식이불분명하여산출이불가하고이에 따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간 중 산출되지 않았음.
- □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대안적 핵심성과지표 고찰
 - 선행연구를통해평가되고제안된핵심성과지표를고찰하여저출산대응분야,고령사회대 응 분야, 인구변화 전체 대응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함.
 - 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핵심과제성과지표에대한평가결과적절한수준(4.0 점) 으로 평가된 지표는 다음과 같음.

<표 5-6> 핵심성과지표(안)

분야	핵심성과지표(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저출산 대응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보육시설 평가인증률(%)
	45~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고양시된 네ㅇ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노인인구대비 인정률)(%)
인구변화 전체 대응	산업재해율(%)

자료: 이삼식, 이지혜, 김세진. (2014).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 이삼식외(2014)와강은나외(2015)에서제시된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핵심 성과지표 중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는 다음과 같음.

<표 5-7> 핵심성과지표 및 국제비교 지표

영역	핵심과제 성과지표	국제비교 지표
저출산 대응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연간근로시간
	-임신·분만 취약지역수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출생아 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
	-보육·교육비 지원율	-GDP 대비 보육·교육비 공적 지출
	-보육시설 평가 인증률 -시간연장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율 -아이돌보미 연계건수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
	-아동안전사고사망률(10만명 당 명)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고령사회 대응	-고령자 고용률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	
	용보험 가입률	-실제은퇴연령과 공식은퇴연령 차이
	-국민연금 가입률 -퇴직연금 가입률	-연금 급여의 소득 대체율
	-노인일자리 창출수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률
고양시되 네ㅇ	-공적소득보장률	-노인빈곤율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65세 이상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비율: 요양시설이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율(60세 이상)	용 및 재가 서비스 이용률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 -노인교통사고사망률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성비 -65세이상 고령자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인구변화 전체 대응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 고용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	-여성고용률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평생학습참여율	-25~64세 형식/비형식 교육 참여율
	-산업재해율	-업무성 사고 사망만인율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자료: 이삼식, 이지혜, 김세진. (2014).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강은나, 이소영, 오신휘, 기재량. (2015). 2014 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 제3차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대안 지표는 다음과 같음.

<표 5-8>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 개선(안)

분야	핵심성과지표(안)	출처
저출산 대응	실질 청년 취업률	통계청 신규 개발 필요(구직 포기/유보자 포함)
	혼인 이행률	통계청 신규 개발 필요(혼인건수/미혼자 인구)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국토부 주거실태 조사 개선(혼인연도 항목 추가)
	청년 비정규직 비율	고용부 고용통계
	합계 출산율	통계청 출산 통계
	출산 기타 지표	통계청 신규 개발 필요(유배우 출산율, 조정합계출산율)
	보육수준 만족도	보육실태 조사 항목
고령사회 대응	노인 사고사율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노인 자살율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인구변화 전체 대응	연령별/혼인상태별 고용률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가구 정보 항목 추가 필요)
	유자녀 부모 고용률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가구 정보 항목 추가 필요)
	일반 만족도	복지부 저출산 고령화 국민의식 조사

자료: 김은정, 이상림, 강은나, 김대중, 김종훈, 박종서, ...이지혜. (201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7년 모니터링.

○ 장인수외(2021)의연구에서는저출산고령사회정책각분야별전문가조사및내부연구진 의논의를통해 향후 정책의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외 기본계획에 서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성과지표를 제시하였음.

<표 5-9>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 핵심성과지표(안)

분야	핵심성과지표(안)
저출산 대응	- 임금 격차(성별, 교육수준별, 소득분위별 임금격차) - 유자녀 부모 고용률 - 청년 주거비 부담 관련 지표 - 가족 주거비 부담 관련 지표 - 가족 주거비 부담 수준 - 출산의향 자녀 수 - 계획자녀 수와 합계출산율 간 간극(gap) - 노동시장의 성 평등 관련(고용률, 임금 수준 격차, 남녀 노동시간, 돌봄시간 격차) 지표 - 혼인출산 관련 집계 수준 지표의 세분화(연령별 혼인 이행률, 유배율 출산율,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자녀 수별 유배우 출산율)유배우출산율 - 혼인이행률 - 조정합계출산율 - 코호트완결출산율 - 이상자녀수 -세부 범주별 합계출산율(소득수준별 합계출산율, 교육수준별 합계출산율, 자산 수준별 합계출산율 등) - 유자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 전체 근로자 대비 유급육아휴직자 비율 - 임금 대비 육아휴직급여 비율 - 혼인 이후 출산까지의 평균기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 '보육비 부담(소득 대비 보육비 비중)' - 아동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부모의 10세 미만 자녀와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 - 공공보육(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이용률 - 건강한 출산 비율 -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 채용률 -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인식 및 차별 개선 필요도 -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 경험률
고령사회 대응	- 노인 주거비 부담 - 고령자 건강관련 지표(본인부담 의료비, 장기요양인정자 비율 등) - 수정된 노인빈곤율 - 노인가구의 경제적 지표 - 노인가구의 주거환경(주택 점유형태 등)에 관한 지표 - 중장년층의 고용정보(고용형태: 자영업,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정규직,비정규직) - 가구구성현황(자녀와의 동거여부, 인접해서 거주하는지 등)
인구변화 전체 대응	- 성별 상대빈곤율 - 연령대별 상대빈곤율 - 연령대별 (가능한 경우 혼인상태 추가) 고용률 - 경력단절 여성취업률 - 지역 불균형 관련 지표(인구소멸지수, 고령화율, 고용・결혼・출산・의료・고용・ 주거・돌봄・교육・ 지방재정 등 주요 영역별 대표지표)

자료: 장인수, 정찬우, 이소영, 이도훈, 김세진(2021). 2020년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제3절 핵심성과지표의 원칙과 안

- 1. 핵심성과지표 개발 원칙
- □ 핵심성과지표 기본 방향
 - 핵심성과지표의 기본 방향으로 SMART 원칙을 고려함.

- Doran(1981)은성과 관리의목적(goal)과 세부목표(objectives)를 정하는 기준으로 SMART 원칙을 제시하였고, Bogue(2005)의 경우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의 전략으로서 SMART 원칙을 제시함.
- SMART 원칙은국내의연구에서도성과지표가갖추어야하는기본적인특성으로잘알려져 있고 활용됨(최정아, 2014; 김영록, 2013).
- 따라서저출산·고령사회정책기본계획의목표달성을위한지표의구체성(specific),관련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을 우선적으로고려하여지표를 구성하고지표의목표치 설정에 있어서는 달성 가능성(attainable) 및시간 내 달성 가능성(time-bounded)을 고려할 수 있음.
- 상기 논의를 바탕으로 한 핵심성과지표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적절성)적절성또는목표와의관련성의원칙은성과지표는제4차기본계획의비전과3 대 목표 달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3대 목표는 개인 의 삶의 질 향상/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임.
 - (명확성) 명확성 또는구체성의 원칙은 지표의정의와산출식이 명확해야 한다는것임. 따라서가능한 공식통계자료(승인통계)를 활용하고가급적지표의산출과지표의의미 파악이 용이한 지표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측정가능성)지표산출이가능해야하며 향후산출된지표의축적을위한자료추출의 접근성이높아야함. 자료 접근성뿐만아니라자료 공표주기를 고려하여 5년 이내기간 의 주기를 가진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효율성)성과지표간 유사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하며 효율적인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지표는 투입(input) 지표를 지양하고 산출(output) 또는 결과(outcome)지표를 지향함

2. 핵심성과지표(안) 발굴 경과

- □ 이전 기본계획의 핵심성과지표, 대안으로 제시된 핵심성과지표 등 검토
 - 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핵심성과지표(저출산분야18개,고령사회분야17개, 성장동력분야10개로총45개지표),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각분야별핵심 과제,핵심과제의성과지표,핵심성과지표에대한평가결과,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의 핵심성과지표(총 13개 지표)
- □ 국제비교가능한성과지표.향후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활용될필요가있는지표

에 대한 선행연구 사례 검토

- OECD(2020),이삼식외(2014)와강은나외(2015)에서제시된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의핵심성과지표 중국제비교가 가능한지표, 김은정외(2018)에서제시된제3차저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핵심성과지표에대한대안지표, 장인수외(2021)의연구에서 제시된 제4차저출산고령사외기본계획에서지속적으로추적, 관리하여야할필요성이 있 는 향후 핵심성과지표 검토
- □ 핵심성과지표(안)전문가 의견수렴(내부 연구진 및 내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등)
 - 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지표개발에대한정합성,출산율대체지표, 노후생활보장 관련, 청년기 지원 관련 지표에 대한 외부 전문가 심층 자문
 - 연구진 및내부전문가와 적절성, 명확성, 측정 가능성, 효율성을 중심으로 각4개세부전략별 잠정도출된 핵심성과지표(안) 및 추가 보완, 개선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 4차에 거쳐 논의
- □ 기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활용 가능한 지표 검토
 - 국가지표체계(가치지향적지표:국가발전지표총93개,국민삶의질지표총71개)⁹⁾,e-나라지표(국정모니터링지표총743개)¹⁰⁾,균형발전지표(핵심지표총2개,객관지표총41개,주관지표 총 28개)¹¹⁾ 검토

3. 핵심성과지표(안)

- 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비전과목표,4대추진전략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 절성·명확성·측정 가능성·효율성 등을 감안, 38개 지표(안)을 마련
- 다만,하기성과지표는4대추진전략을중심으로구성한성과지표로써보다큰범위를아우르는 중영역 이상의 지표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이에, 제4차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3대목표중 '개인의 삶의 질향상, 성평등하고공정한 사회, 인구변화대응 사회혁신'에 대한 종합지표를 추가적으로 제시함.

⁹⁾ 국가지표체계(K indicator). http://www.index.go.kr/unify/main.do?pop=%27y%27에서 2022.3.1. 인출)

¹⁰⁾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main.do?cate=1에서 2022.3.1. 인출)

¹¹⁾ NABIS 내 균형발전지표(https://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에서 2022.3.1. 인출)

<표 5-10> 4대 추진전략별 핵심성과지표(안)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부는 모의 속아휴의 사용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환분 수 장당이라이집, 작장이란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이 용당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한계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건강한 출산 비율 건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고명자 보쟁교통사고 사망률 건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고명자 보쟁교통사고 사망률 건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고명자 보쟁교통사고 사망률 건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고명자 보쟁교통사고 부산률 건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사원연명의료의하서 등목률 보존도의 역량이 교루 발휘되는 사회 성별고용상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성별고용상 함께 일하고 함에 돌보는 사회 성별고용상 함께 일하고 함에 돌보는 사회 함에 일하고 함에 돌보는 사회 함에 일하고 함에 돌보는 사회 함시 결과용 함께 일하고 함에 돌보는 사회 함시 결과용 함께 일하고 함에 돌보는 사회 함시 경상을 다 생각하고 함시 기차 가장 함시 한 일등 지수, 기차 가장 함시 한 일등 지수, 기차 가장 함시 함시 이 교육 발휘되는 사회 병기를 가장 함시 함시 이 교육 함의는 사회 함시 일하고 함시 들보는 사회 함시 일하고 함시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함시 일하고 함에 돌보는 사회 함시 일하고 함에 돌보는 사회 함시 일하고 함에 돌보는 사회 함시 입원 기차 함시 입원 기차 함시 입원 기차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함시 입원 이 교육 함의는 지원 함시 한 일등 지수에 대한 집을 한 구가로 변화에 대한 점을 인구구로 변화에 대한 점을 보인증과 젊은중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로 변화에 대한 점을 보인증과 젊은중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로 변화에 대한 점을 인구로 변화 점을 가가 함께 가게 바로 인구로 변화에 대한 점을 인구로 제	3대 목표	상위 지표	추진전략	하위지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부 또는 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시회 아동의 전반적 삶의 반족도(행복도) 아동민곤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시회 건강한 출산 비율 건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고병자 보행교통사고 부산물 건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고병자 보행교통사고 부산물 건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사원연명의료의용자 등폭률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성별고용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성별고용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성별고용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설년교용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설년교육물 안구의 역약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유아휴직자 고용유지 현황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유아휴직자 고용유지 현황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원산인계 사업 예산 규모, 교등교육 단계의 GDP대비 정부의 공교 육비 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형생학습 참여윤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병생학습 참여윤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병생학습 참여윤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병생학습 참여윤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청년민곤용 구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청년민곤용 구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원생학습 참여윤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원생학습 참여윤 경태가 사회원이 구를 발휘되는 사회 원생학급 참여윤 전략 그루 역량이 교로 발휘되는 사회 원생학급 참여원 기수를 전략하고 모두 역량이 교로 발휘되는 사회 원생학급 참여윤 건무조 변화에 대한 적응 한부모가족의 차별 경험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구나문화구족의 차별 경험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구인주과 집은준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구인증과 집은중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구인증과 집은중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구인공과 집은중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구가관형반전기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무가관형반전기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무가관형반전기표 대한 심기표 명구의 표준한 보다 변화에 대한 적음 구구관형반전기표 대한 심기표 제공한 임관하고 함께 대한 적음 기관형반전기표 제공한 임관하고 함께 대한 적음 기관형반전기표 제공한 임관형반전기표 제공한 인구조전환에 대한 적음 기관형반전기표 제공한 기관형반전기표 제공한 인구조전환에 대한 적음 기관형반전기표 제공한 인구조전환 전환적으로 제공한 기관형반전기표 제공한 인구조전환에 대한 적은 기관하고 제공한 기관하고 제공한 기관하고 제공한 기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용률, 국공립유치원이용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건강한 출산 비용 건강하고 등통적인 사회 구축 고령자 보행교통사고 사망물 건강하고 등통적인 사회 구축 사전면밀의료의항서 등록를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성분인의 지수적 여가생활 반족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임급 경차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임급 경차 경기에 의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임권인제 사업 예산 규모, 고등교육 단계의 GDP대비 정부의 공교 유비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명생학습 참여시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경인권은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명생학습 참여시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명생학습 참여시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명생학습 참여시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화되는 사회 명생학습 참여시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화되는 사회 명산인제 고용 발취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만구와 차별 경험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만구와 화병 경험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모수하고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가관형란건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중가관형란건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공가관형란건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가관형란건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가관형란건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가관형란건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중가관형란건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중가관형란건대표 작가에 무관하다 제공 존개합 점환 전기적 제공 관계합 대표 전기적 제공 관계합 제공 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재인 삶의 질 함상 환성 한상 전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건강수명 건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건강수명 건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구축 장기요약인정자 중 제가서비스 이용률 건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고명자 보행교통사고 사망률 건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고명자 보행교통사고 사망률 건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고명자 보행교통사고 사망률 건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사원면병의료의향시 등록률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신중년의 지속적 여가활동 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선원년의 여가생활 만족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우아휴식자 고용유지 현황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육산 결정의 주도성(출산 여부. 출산 시기, 자녀수) 경제 일탁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유사휴식자 고용유지 현황 생연간 성교육 참여(경험)률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위생학습 참여요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위생학습 참여요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청년인군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청년인군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청년인군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기생학급 참여시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기생학급 참여시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기생학급 참여시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기생 청년인군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기생학급 참여시간 모두의 역량이 교루 발휘되는 사회 기생학급 점심기표 평균의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만부조가족의 차별 경험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노인증과 젊은증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노인증과 젊은증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노인증과 젊은증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모인증과 젊은증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모인증과 젊은증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모인증과 젊은증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모인증과 젊은증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모인증과 젊은증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모인증과 젊은증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되면 수급률 국가관형반건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데안 대비 작용구기 가원 비중				
상의 집 함의 민족도 등목적인 사회 구축 건강수다명 건강하고 등목적인 사회 구축 건강하고 등목적인 사회 구축 건강하고 등목적인 사회 구축 건강하고 등목적인 사회 구축 구택에서 발생한 고령자 안전사고용 건강하고 등목적인 사회 구축 고령자 보행교통사고 부상률 건강하고 등목적인 사회 구축 고령자 보행교통사고 부상률 건강하고 등목적인 사회 구축 사원연명의료의향서 등목률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신중년의 지수적 여가활동 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선량교의 역가생활 만족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한글 이구를 받아 들는 사회 중고등학생 연간 정교육 참여(경험)를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유아휴직자 고용유지 현황 적인 이구를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평생학습 참여원 구도, 고등교육 단계의 GDP대비 정부의 공교육비 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평생학습 참여원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평생학습 참여원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정신인 가을 여성 비원(기혼여성 대비/비취업여성 대비), 경제활동참 가을, 성별 비정규식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등, 유아휴직자 고용유지 현황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한부모가족의 차별 경험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보인증과 젊은증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노인증과 젊은증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도인증과 젊은증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도인증과 젊은증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도인증과 젊은증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무만 연구를 가관 형실지표 행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무만 연구를 구간 한글에 대한 적응 무만 연구를 함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무만 이구를 가관 형실지표 행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무만 이구를 가관 함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무만 연구 가관 변화에 대한 적응 무만 연구를 가관 한글에 대한 적응 무만 연구를 가관 한길에 대한 적응 무만 연구를 가관 한길에 대한 적응 무만 연구를 가관 함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무만 연구를 가관 함심지표 평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되는 아내 국가래부 비중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되는 아내 국가래부 비중				
한상 건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간강하고 등당적인 사회 구축 가기요양인정자 중 제가서비스 이용율 건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고명자 보행교통사고 사망을 건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고명자 보행교통사고 사망을 건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고명자 보행교통사고 사망을 건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사관 연행의료의향자 등목물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신중년의 지속적 여가활동 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선충년의 여가생활 만족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참발과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참발과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중교등학생 연간 정교육 참여(경험)를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중교등학생 연간 정교육 참여(경험)를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형산인재 사업 예산 규모, 고등교육 단계의 GDP대비 정부의 공교 유비 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형생학습 참여원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청년반곤을 경력간 여성 비율(기혼여성 대비/비취업여성 대비), 경제활동참가 상 등등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청년반곤을 경력간절 여성 비율(기혼여성 대비/비취업여성 대비), 경제활동참가 왔 생별 비경규칙 사회보험(국민연급,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등, 육아휴식자 고용유지 현황 모두의 역량이 교루 발휘되는 사회 천년반곤을 경력간절 여성 비율(기혼여성 대비/비취업여성 대비), 경제활동참가 왔 생별 비경규칙 사회보험(국민연급,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등, 육아휴식자 고용유지 현황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한부모가족의 차별 경험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보안층과 젊은충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기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노인층과 젊은충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기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도인층과 젊은충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기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되었다고 하십시조 평심기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무인증구 급용 합심기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무신하고 함심기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무인층과 젊은충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기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무인증구 개절 장심기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되었다고 하십시조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무인증구 개절 장심기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되었다고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당한 구가관 형실진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당한 구가관 형실진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GDP 대비 국가제무 비중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GDP 대비 개정수기 비율				
건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고령자 보행교통사고 사망률 건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고령자 보행교통사고 부상률 건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원합교용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기원 대한 경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점응 인구가조 변화에 대한 점응 인구가관 변화에 대한 점응 인구가조 변화에 대한 점응				
선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고령자 보행교통사고 사망률 건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고령자 보행교통사고 부상률 건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사원연명의료의향서 등록률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신중년의 여가생활 만족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성별교용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충간 열권이 주도성(출산 여부, 출산 시기, 자녀수) 중기사 명등지 수, 공정사 회 등등지 수, 국제성 명등지 수 등등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육산 결정의 주도성(출산 여부, 출산 시기, 자녀수) 환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출산 결정의 주도성(출산 여부, 출산 시기, 자녀수) 중고등학생 연간 성교육 참여(경험)률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육아휴격자 고용유지 현황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평생학습 참여시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평생학습 참여시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평생학습 참여시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청년민곤용 경리단관용 경력당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전략인권은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통, 육아휴식자 고용유지 현황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전충년 제취업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선당년 제취업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선당년 제취업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화되는 사회 건중년 제취업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화되는 사회 건중년 제취업비율 모두의 역량이 교루 발화되는 사회 건중년 제취업비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다문화가족의 차별 경험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도인증과 젊은충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노인증과 젊은충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민연금 수급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민연금 수급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가관형발전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가관형발전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00			
선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고명자 보행교통사고 부상률 건강하고 등동적인 사회 구축 사전연명의료의향사 등록률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신중년의 지속적 여가활동 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선충년의 여가생활 만족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청별고용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출산 결정의 주도성(출산 여부, 출산 시기, 자녀수)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출산 결정의 주도성(출산 여부, 출산 시기, 자녀수)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출산 결정의 주도성(출산 여부, 출산 시기, 자녀수)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충고, 동학생 연간 성교육 참여(경험)률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육아휴직자 고용유지 현황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평생학습 참여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평생학습 참여원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청년빈곤율 경력단절 여성 비율(기혼여성 대비/ 비취업여성 대비), 경제활동참가송, 성별 비정규직 사회보험(국민연급, 건강보험,고용보험)가입 돌. 육아휴직자 고용유지 현황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대기업(1,000인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비율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단무로가족의 차별 경험률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도인충과 젊은충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인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노인충과 젊은충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인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가관형발전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당한 대기 개정수지 비율				주택에서 발생한 고령자 안전사고율
선평등 기구 변화에 대한 적응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기구 한국 한국 기관 행산인과 표현의 표현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인구구표 변화에 대한 적응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인구구표 변화에 대한 적응 인구구를 만하는 전후 연구 대한 인구를 가관했는지로 해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인구 대비 가가부는 비중 인구 대비 가가부는 비중				0 1 0 0 1 10 0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신중년의 지속적 여가활동 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신중년의 여가생활 만족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시간당 임금 성별격차, 상용근로자 성별 비율, 성별 임금 격차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출산 결정의 주도성(출산 여부. 출산 시기, 자녀수)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출산 결정의 주도성(출산 여부. 출산 시기, 자녀수)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중고등학생 연간 성교육 참여(경험)률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역산인과 사업 예산 규모, 고등교육 단계의 GDP대비 정부의 공교 수, 국제성 평등지 수, 국제성 평등지 수 등등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평생학습 참여원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기원, 상별 비정규칙 사회보험(국민연급,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률, 육아휴식자 고용유지 현황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신중년 재취업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신중년 재취업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신중년 제취업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신중년 제취업비율 모두의 역량이 교루 발휘되는 사회 신중년 제취업비율 모두의 역량이 교루 발휘되는 사회 신중년 제취업비율 모두의 역량이 대한 적응 한부모가족의 차별 경험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도만층과 젊은층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노인층과 젊은층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가관형발전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중인구 대비 국가체무 비중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GDP 대비 개정수지 비율				
정평등 하고 공기성 명하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성별고용률 시간당 임금 성별격차, 상용근로자 성별 비율, 성별 임금 격차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중고투학생 연간 성교육 참여(경험)률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중고투학생 연간 성교육 참여(경험)률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역산인재 사업 예산 규모, 고등교육 단계의 GDP대비 정부의 공교 유비 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평생학습 참여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평생학습 참여원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정보인관을 경력단절 여성 비율(기혼여성 대비/비취업여성 대비), 경제활동참 가율, 성별 비정규직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률, 육아휴직자 고용유지 현황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청년민곤율 경력단절 여성 비율(기혼여성 대비/비취업여성 대비), 경제활동참 가율, 성별 비정규직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률, 육아휴직자 고용유지 현황 신원구로 변화에 대한 적응 한부모가족의 차별 경험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다문화가족의 차별 경험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도인증과 젊은증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모인증과 젊은증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기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모인증과 젊은증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기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기구로 변화에 대한 적응 기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기구관 변화에 대한 적응 기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기구관 변화에 대한 적응 기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기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기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기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기구구의 환경 경구를 한구기로 함된에 대한 적응 기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기구구 함된 제고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기구로 변화에 대한 적응 기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기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기구구를 가게 함시되죠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기구가 경막 기관 등 전기 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이 대한 작은 기구로 변화에 대한 적응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이 되는 대비 제정수기 비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성별고용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임급 성별격차, 상용근로자 성별 비율, 성별 임급 격차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출산 결정의 주도성(출산 여부. 출산 시기, 자녀수) 출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출산 결정의 주도성(출산 여부. 출산 시기, 자녀수) 경등지수, 국제성 평등지수, 국제성 평등지수 등등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명생학습 참여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평생학습 참여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평생학습 참여원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평생학습 참여시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경력반진은율 경력단결 여성 비율(기혼여성 대비/ 비취업여성 대비), 경제활동참 가을, 성별 비정규직 사회보험(국민연급,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 유아휴직자 고용유지 현황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건축는 재취업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건축는 재취업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건축는 자기 가게 발경함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한부모가족의 차별 경험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도인증과 젊은총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모인증과 젊은총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모인증과 젊은총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모인증과 젊은총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가균형발건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중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중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신중년의 여가생활 만족도
성평등 하고 공제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출산 결정의 주도성(출산 여부. 출산 시기, 자녀수)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중고등학생 연간 성교육 참여(경험)률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역신인재 사업 예산 규모, 고등교육 단계의 GDP대비 정부의 공교 육비 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평생학습 참여원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평생학습 참여원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정년빈곤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정년빈곤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청년빈곤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청년빈곤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전략단절 여성 비율(기혼여성 대비/ 비취업여성 대비), 경제활동참 가율, 성별 비정규직 사회보험(국민연급,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 육아휴직자 고용유지 현황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신중년 재취업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대기업(1,000인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비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한부모가족의 차별 경험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보인층과 젊은충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보인층과 젊은충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가균형발전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가균형발전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평등지 수, 국제성 평등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상평등 하고 구시성 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지 수 기상 명등 하고 수 기상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출산 결정의 주도성(출산 여부. 출산 시기, 자녀수)
성평등 하고 수, 국제성 형등지 수, 국제성 형등지 수 등등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평생학습 참여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평생학습 참여원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정년빈곤율 경력단절 여성 비율(기혼여성 대비/ 비취업여성 대비), 경제활동참 가율, 성별 비정규직 사회보험(국민연급,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 육아휴직자 고용유지 현황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선중년 재취업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대기업(1,000인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비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한부모가족의 차별 경험률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나민층과 젊은층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노인층과 젊은층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노인층과 젊은층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모인층과 젊은층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구민연금 수급률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민연금 수급률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가균형발전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중고등학생 연간 성교육 참여(경험)률
정평등 하고 수, 국제성 형등지 수, 국제성 형등지 수 등등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육아휴직자 고용유지 현황
공정사 회	_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수 등등	공정사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평생학습 참여율
지출(G DP 대비) 변화에 대한 적응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기구 관합 전기표 행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이 모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이 모구조조 변화에 대한 적용 이 모구조조 변화에 대한 적용 이 모구조조 변화에 대한 적용 이 모구조조 변화에 대한 전화조	<u>छ</u>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평생학습 참여시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가율, 성별 비정규직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률, 육아휴직자 고용유지 현황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신중년 재취업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대기업(1,000인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비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한부모가족의 차별 경험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다문화가족의 차별 경험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노인층과 젊은층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노인층과 젊은층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모인층과 젊은층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모인층과 젊은층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구민연금 수급률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가균형발전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당한 전기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당한 대비 국가채무 비중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당한 대비 국가채무 비중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당한 대비 국가채무 비중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당한 대비 자정수지 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청년빈곤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신중년 재취업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대기업(1,000인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비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한부모가족의 차별 경험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다문화가족의 차별 경험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노인층과 젊은층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노인층과 젊은층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민연금 수급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가균형발전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민구변 한 대응 사회혁신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대기업(1,000인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비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한부모가족의 차별 경험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다문화가족의 차별 경험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노인층과 젊은층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노인층과 젊은층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민연금 수급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가균형발전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인구변 화 대응 사회혁 신				신중년 재취업비율
인구변 화 대응 사회혁 신 신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대기업(1,000인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비율
인구변 화 대응 사회혁 신 고출(G DP 대비) 등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보인층과 젊은층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보인층과 젊은층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보인층과 젊은층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보인층과 젊은층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보인연금 수급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가균형발전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화 대응 사회혁	회복지 지출(G DP 대비)		
인구변 회복지 지출(G N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다문화가족의 차별 경험률
화 대응 사회혁 신 신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민연금 수급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가균형발전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사회혁 DP 대비) 등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민연급 우급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가균형발전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노인층과 젊은층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신 대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석응 국가균형발전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민연금 수급률
등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국가균형발전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건강보험 재정수지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건강보험 재정수지율

자료: 저자 작성.

<표 5-11> 3대 목표별 (종합)핵심성과지표(안)

영역		핵심성과지표(안)
개인 삶의 질 향상	-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 국가성평등지수	
인구변화대응 사회혁신	- 공공사회복지지출(GDP 대비)	

자료: 저자 작성.

□ 4개추진전략별핵심성과지표(안)및3대목표별(종합)핵심성과지표(안)을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영역의 핵심성과지표(안)은 다음과 같음.

<표 5-12>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영역의 핵심성과지표(안)

핵심성과지표(안)

- 부 또는 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 성별고용률, 상용근로자 성별비율
- 시간당 임금 성별격차
- -공보육(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이용률,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온종일돌봄 이용자수
- 아동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행복도)
- 아동빈곤율
- 출산 결정의 주도성(출산 여부. 출산 시기, 자녀수)
- 중고등학생 연간 성교육 경험률
- 건강한 출산 비율

자료: 저자 작성.

○ 부 또는 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 (적절성)육아를위한일-생활균형정도를측정할수있는대표적인지표중하나라고할수있음.육아휴직은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모두가누리는 워라벨'영역의첫번째 과제로제시되어 있으며,주요 저출산대응정책으로서 지속확대되어추진되고있음.다만육아휴직사용자가공기업,대기업에편중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어 필요시민간과공공기업체의규모별육아휴직율을추가적으로산출하여보완할필요,구체적으로세부적으로기업체 규모별(300인 이상,300인 미만,50인 미만,5인 미만,기업체규모 미상 포함)지표를 보조지표로서 산출하는 것을 고려할수 있음.
-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육아휴직 대상이되는 출생아부모중 당해연도에 실제 육아휴 직을 한 사람의 비중,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수급자자료, 건강보험납입고지 유예자자 료,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육아휴직통계결과를 이용하여 산출 가능함. 기업체 규모 별 육아휴직자 비율 역시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성별고용률

- (적절성)성평등하게일할수있는사회특성을간명하게반영할수있는지표라는점에 서적절성에부합하는것으로판단됨.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일가정양 립의곤란한주된원인으로성차별적노동시장구조를지적하며성별고용률과성별임 금격차를제시하였음. 성별고용률은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성평등하게일할수 있는사회'영역의 첫 번째 과제인 공정한 채용 환경 조성을 통해 성평등한 일터조성을 위한 결과 지표임.

- (명확성및측정가능성)고용률은생산연령인구(15~64세인구)중특정시점에취업해 있는 인구의비율이므로 이를 성별로구분하여 산출함. 구체적으로 만15-64세취업자수를 같은 연령대의 전체 인구로 나누어 산출함.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일을 도와 준 가족 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포함함.

○ 시간당 임금 성별격차

- (적절성) 성평등하게일할수있는사회특성을반영하는또다른지표로서,특히일자리의 절적 측면에 대한 성평등 특성이 반영되어 이를 평가할수 있는지표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일가정양립의 곤란한주된원인으로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를지적하며 성별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를 제시하였음. 시간당임금에 대한성별격차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평등하게일할수 있는사회' 영역의 성별격차 해소기반을 위한과제로서 성별임금격차구조분석이 제안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지표임.
- (명확성및측정가능성)성별시간당임금(월임금총액:월간총근로시간)의차이로고 용노동부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통해매년산출가능하므로개념이비교적명 확하고,측정가능성이높음.참고로후술할OECD(2020)에서는다른방식으로성별임 금 격차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함.

○ 성별 임금 격차

- (적절성)성평등하게일할수있는사회특성을반영하는또다른지표로서,특히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대한 성평등 특성이 반영되어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임.
- (명확성및측정가능성)여성의중위임금대비남성의중위임금비중(남성의중위임금대 비성별중위임금차이의비중)으로측정됨.OECD(2020)에따르면,우리나라의성별임 금격차지표 수치는 34.6%로 OECD 평균인 12.9%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용근로자 성별 비율

- (적절성)성평등하게일할수있는사회특성중일자리의질적측면을반영하는또다른 지표로서의미가있음.성차별적노동시장구조특성을 요연하게 파악할수있는지표로 서의미가 있음.

- (명확성및측정가능성)해당지표는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를통해집계하고있는성 /종사상지위별취업자¹²⁾ 내 전체 성별 취업자 중에서 상용근로자의 비율로 산출 가능함
- 공보육(국공립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이용률,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 (적절성)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아동의기본권과복지증진에대한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으로서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확충, 온종일돌봄체계구축, 아이돌봄서비스확대등을 제시하였음.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개선정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표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지표로 활용되었을 정도로 해당 영역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음.
 - (명확성및측정가능성)공보육(국공립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용률은전체어린이집 이용 아동중 국공립, 직장,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의미하며매년12월말기준으로산출되는복지부의「보육통계」를활용하여산출가능하며, 국공립유치원이용률은 전체유치원이용 아동 중국공립유치원이용 아동 비율을의미하며,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를활용하여산출가능함.

○ 온종일돌봄 이용자 수

- (적절성)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아동의기본권과복지증진에대한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으로서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확충, 온종일돌봄체계구축, 아이돌봄서비스확대등을 제시하였음.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개선정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표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지표로 활용되었을 정도로 해당 영역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음.
- (명확성 및측정 가능성) 온종일돌봄이용자수를 함께 고려할필요성은다분하나, 온종일돌봄이용자수는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 사업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부처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원대상과 사업 내용 등에 차이가 있어 측정 가능성에다소 한계점이 있음. 아울러 각부처별통계를 확인하여 취합, 산출하여야함. 또한, 이용자수의 지속적인 추적, 관리는 현재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영유아수 감소에 따라 상기정책의 성과를 올바르게 포착하지 못할 한계점도 존재함.

○ 아동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행복도)

—(적절성) 상기지표는 아동기본권의보편적보장측면을 포함하여, 제4차기본계획의 비전인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3대 목표 중 하나인 "개인의 삶의 질 향

¹²⁾ 통계청(2022). 성/종사상지위별 취업자.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28S에서 2022.4.7. 인출.

상"과의 부합도가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명확성 및측정가능성)상기지표는 5년마다실시되는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통해산출 가능함.
- ※ 참고) (행복도 점수: 2013년 6.10점 → 2018년 6.57점 (OECD 평균 7.6점 / OECD 국 가 중 최하위))

○ 아동빈곤율

- (적절성)상기지표는특히아동기본권의보편적보장측면을직,간접적으로반영하고 있는지표로서의미가있음.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아동이존중받고 권리를보장 받을수 있도록'아동 최우선의 원칙'실현 방향으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정책당사자인아동중심 정책마련할 것을 추진 방향으로설정하고 이를위해아동의 출생·양육기간동안사회·경제적지원의필요성을제시하였음.따라서아동빈곤율은아 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결과지표로 적절함.
-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18세 미만의 전체 아동중'중위소득의 50% 미만소득 가정'아 동의 비율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산출 가능함.

○ 출산 결정의 주도성

- (적절성)본지표는 생애 전반성·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지표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생애 전반성·재생산권 영역의 추진 방향의 하나인 '남녀가상호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과 직접적으로 부합되는 지표임.
- 출산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서 출산 관련 의사 결정 관련 환경의 적절한 조성, 성평등한 사회 구현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됨.
- (명확성및측정가능성)출산결정(출산여부.출산시기,자녀수)에 있어서의주도적으로결정(주로내가+대체로내가+나와상대방이함께)한비율로3년마다실시되는가족과 출산 조사를 통해 산출 가능함.

○ 중고등학생 연간 성교육 참여(경험)률

- (적절성)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생애전반성·재생산권영역의첫번째추진 과제인성·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의 세부과제로 학생 대상의 성교육을 제시하고 있 음. 따라서 해당지표는 생애 전반성·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추진전략과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산출지표임.
- (명확성 및측정가능성)최근12개월동안학교에서(수업시간,방송교육,강당에서의교육 등모두 포함)성교육을받은 적이 있는사람의분율로 매년실시되는 청소년건강행태온

라인조사(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산출 가능함.

○ 건강한 출산 비율

- (적절성)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생애전반성·재생산권영역의추진과제인 건강한임신,출산지원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지표임. 부정적임신 결과를 방지하고 건강한성·재생산권 향유를 도모하기위한정책개선을 직접적으로지지하는결과지표임.
- (명확성 및측정가능성)임신유지율은임신이종결되었을때,종결된임신결과중사산, 자연유산,인공임신중절을통해임신소모가되지않은비율로3년마다실시되는「가족과 출산 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가능함.

나. 건강하고 능동적인 사회 구축

□ 건강하고 능동적인 사회 구축 영역의 핵심성과지표(안)은 다음과 같음.

<표 5-13> 건강하고 능동적인 사회 구축 영역의 핵심성과지표(안)

핵심성과지표(안)
- 노인빈곤율
- 건강수명
- 노인자살률
- 장기요양인정자 중 재가서비스 이용률
- 주택에서 발생한 고령자 안전사고율
- 고령자 보행교통사고 사망률
- 고령자 보행교통사고 부상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률

자료: 저자 작성.

○ 노인빈곤율

- (적절성)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소득공백없는노후생활보장체계'영역의 첫 번째 핵심 과제인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결과지 표로 의미가 있음. 즉,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구축 및 적용에 대한 성과를 간 명하게반영하고 있으며 OECD 자료를 통한 국제 비교도 가능한 측면에서 유용함.
- (명확성 및측정 가능성)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중위소 등의 50% 미만 및 30% 미만 '노인의 비율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산출 가능. 현재의 노인상대빈곤율은 중위소 등 50%를기준으로하고 있기때문에, 현실에 보다부합하는 중위소 등 30% (생계비수준)의 빈곤선 적용을 추가하여 산출 가능함.

○ 건강수명

- (적절성)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건강하고능동적인고령사회를구축추진 전략의핵심과제인예방적보건의료서비스확충관련현황에서건강수명에 대한문제를 제기하였음. 따라서해당지표는예방적보건의료서비스확충에 대한성과를 평가할수 있는 적절한 결과 지표임
- (명확성및측정가능성)건강수명은기대수명(0세기대여명)에서전체인구의평균질병및 장애기간을 제외한 수명으로 통계청에서 격년으로 발표하는 생명표를 통해 산출 가능함

○ 노인자살률

- (적절성)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건강하고능동적인고령사회를구축추진 전략의 핵심과제인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관련 현황에서 노인 자살률에 대한 문 제를 제기하였음.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를 구축 추진전략과 더불어, 노후기간의 신체적, 물질적 측면을 포함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건강한삶의 정도를 직,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명확성 및측정 가능성) "(자살로 인한 65세 이상 사망자수 ÷ 65세 이상 주민등록연앙 인구) № 100,000" 로통계청,「사망원인통계」,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를활용 하여 산출 가능함.

○ 장기요양인정자 중 재가서비스 이용률

- (적절성)해당지표는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건강하고능동적인고령사회를 구축 추진전략의 핵심과제인 지역사회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과 관련이 있음.
 상기지표는 재가서비스이용 현황을 직접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지역사회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이라는 세부 추진전략에 대한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있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명확성및측정가능성)상기지표는매년발간되는고령자통계및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가능함.

○ 주택에서 발생한 고령자 안전사고 비율

- (적절성)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고령자의대부분이'살던집에서계속살기를희망하나,쇠약해진고령자가안전하게 거주할수 있는 주택환경은 미흡'하다는문제를제기하였음. 따라서 해당 지표는 건강하고 능동적인고령사회 구축추진전략을포함하여보다구체적으로는고령친화적주거환경조성세부추진전략과직접적으로연관되어 있다고판단됨. 이에 해당세부추진전략의 성과를측정하는 핵심지표로서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명확성 및측정가능성)전체고령인구(65세이상인구)대비고령자안전사고건수의

비율로측정함보다구체적으로,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한국소비자원이「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에 접수된 위해정보중노인의가정(주택)내에서 안전사고건수를추출하거나이를분석한소비자위해동향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산출 가능함.

○ 고령자 보행교통사고 사망률/부상률

- (적절성)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고령자의활기찬생활을위해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수 있는 교통·정주 환경 조성'을 해당 영역의 추진방향으로 제시하였음. 따라서 해당 지표는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추진전략의 고령친화적주 거환경 조성 세부 추진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결과 지표로서 적절함.
- (명확성및측정가능성)(사망률)경찰청의「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을활용하여매년산출가능함(보행교통사고사망률 = 해당연령대보행교통사고사망자수÷해당연령대인구×100,000);(부상률)경찰청의「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을활용하여매년산출가능함(보행교통사고부상률 = 해당연령대보행교통사고부상자수÷해당연령대인구×100,000)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률

- (적절성)상기지표는회생가능성이희박하고지속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건강성과가 나타나지않는악화중환자의경우존엄한죽음에대한준비차원의사전연령의료의향에 대한등록현황을 반영하는지표임.이는건강하고능동적인고령사회구축추진전략내 존엄한삶의 마무리지원 세부추진전략의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명확성및측정가능성)전체노인인구대비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비율로복지부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가능함.

다.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영역의 핵심성과지표(안)은 다음과 같음.

<표 5-14>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영역의 핵심성과지표(안)

핵심성과지표(안)

- 혁신인재 사업 예산 규모
- 고등교육 단계의 GDP대비 정부의 공교육비 비율
- 평생학습 참여율
- 평생학습 참여시간
- 청년빈곤율
- 경력단절 여성 비율(기혼여성 대비/ 비취업여성 대비)
- 경제활동참가율
- 성별 비정규직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
- 육아휴직자 고용유지 현황
- 신중년 재취업비율
- 대기업(1,000인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비율
- 신중년의 지속적 여가활동 비율
- 신중년의 여가생활 만족도

자료: 저자 작성.

○ 혁신인재 사업 예산 규모

- (적절성)모두의역량이고루발휘되는사회추진전략과관련하여,미래역량을갖춘창의적인재육성세부추진전략의성과를측정할수있는지표의필요성에따라상기지표를제시함.이는미래인재육성과직,간접적으로연관되어있는혁신인재사업예산만을고려하고있다는점에서미래역량창의적인재육성의성과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고판단됨.
- (명확성및측정가능성)구체적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의 합으로 산출 가능함. 이는 각 연도별부처별 예산안을 활용하여 산출 가능함. 참고로, 2022년 기준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사업의 예산 규모는 413억 원이며,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1.304억 원임.

○ 고등교육 단계의 GDP대비 정부의 공교육비 비율

- (적절성)모두의역량이고루발휘되는사회추진전략과관련하여,미래역량을갖춘창의적인재육성세부추진전략의성과를 측정할수있는지표의필요성에따라상기지표를 제안함.고등교육(대학)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비율은 미래인재양성및교육정책의개선및보완을도모하기위한국가재정규모를표준화하여살펴본다는점에서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명확성 및측정 가능성) 2017년부터 격년으로 공표되는OECD 교육지표자료(우리나라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등이참여하여제공)를 활용함. 참고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비율은 1.6%로 OECD 평균인 1.4%에 비하여 0.2%p 높은 것으로 나타남(교육부, 2021.9.15.).

○ 평생학습 참여율/참여시간

- (적절성)해당지표는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강화'라는세부추진전략에 대한성과를 직접으로 측정가능하다는 점에서 핵심성과지표로서 적절함.
- (명확성및측정가능성)(참여율)교육부의국가평생교육통계결과를통해산출가능하며, 만25~79세성인이1년동안 평생학습프로그램에 한번이라도 참여한비율을 의미함(~'19년까지의참여율은만25세~64세한국성인기준데이터임);(참여시간)교육부의국가평생교육통계결과를통해산출가능하며,평생학습참여자들이평생학습에투자한 연평균 참여시간을 의미함.

○ 청년빈곤율

- (적절성)이는상대적으로빈곤한청년의비율이어느정도인지살펴봄으로서,청년기삶의기반강화 세부추진전략의 성과를 직, 간접적으로 평가가능한 지표로서 이해됨. '청년기삶의기반강화' 전략의 추진 방향으로 제시된 '자립·결혼·출산 등의 중요한 생애과 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삶의 기본적인 자립기반강화' 및 '청년의 안정적 소득 보장 및 삶의 여건을 개선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자산형성 등 생활지원 및 정책 참여 확대'을 고려할 때 기본이 되는 빈곤율은 결과지표로서 적절함.
- (명확성 및측정가능성) 19~34세청년중'중위소득의 50% 미만 및 30% 미만' 청년의 비율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매년 공표)를 통해 산출 가능함.

○ 경력단절 여성 비율(기혼여성 대비/비취업여성 대비)

- (적절성)여성의경력유지및성장기반강화와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동시에해당세부 추진전략의 성과 측정 측면에서 대표성이 있는 지표로서 이해됨.
- (명확성및측정가능성)여성의경력단절규모를파악하는지표로15~54세이하의기혼여성대비또는 비취업여성대비경력단절여성(비취업여성중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초등학생),가족돌봄때문에직장을그만둔여성으로2014년조사부터경력단절여성범위에 '가족돌봄' 추가)의 비율로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매년 산출 가능함.

○ 경제활동참가율

- (적절성)여성의경제활동참가상황을직접적으로관측함으로서,여성의경력유지및성 장기반 강화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성 있는 지표로서 이해됨.
- (명확성및측정가능성)기본적으로본지표는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를활용하여 경제활동가능인구(생산연령인구:15-64세인구)중취업의사가 있는경제활동가능 인구의비율로측정가능하며, 전체 및성별지표를산출하고, 특히여성경제활동참가율 이전체 및남성에비하여 어떠한특성을띠고 있는지살펴볼필요가 있음.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예방법」시행에따라'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만이아닌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세 관찰측면에서도의 미가 있음.

- 성별 비정규직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
 - (적절성) 상기지표역시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강화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성 있는 지표로서 이해되며, 사회보험이라는 사회경제적 안전망 현황을 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명확성 및측정가능성)이는매년 8월 통계청에서발표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 대별부가조사를활용하여측정가능하며,"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포함),시간제근 로자,비전형근로자의 합집합인 비정규직근로자 중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각 각 가입한 이들의 비율로 산출 가능함.

○ 육아휴직자 고용유지 현황

- (적절성)여성의경력유지및성장기반강화와관련하여,경력단절여성의지속적고용현황을 보다 적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 유지'임. 고용유지율, 육아휴직 후복직자수,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동일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수 등을 확인할 필요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상기 지표의 의의가 존재함.
- (명확성및측정가능성)해당지표의중요성과의의는다분하나핵심성과지표로서견지 하여야할 명확성및 측정가능성측면에서의 의미는다소모호함. 고용유지율, 육아휴직 후복직자 수,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동일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 수 등의 지표는 매년 고 용보험DB자료를 활용하여산출하여야하며, 고용보험DB자료는 고용노동부 내해당담 당부서의 승인을 거쳐 반출 가능함. 또한 지표 산출 작업은 연구용역 수준에 준할 만큼 간명하지 않음. 종합적으로 향후자료 접근용이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지 표산출 과정이 간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측정가능성 및 명확성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 다고 보여짐.

○ 신중년 재취업비율

- (적절성)상기지표는신중년의품격있고활기찬일·사회참여세부추진전략을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핵심지표이자, 관련된 핵심성과지표를 간명하게 포착할 수 있는지표로서적절함.
- (명확성및측정가능성)신중년(50~69세)주된일자리퇴직후취업한비율로통계청에 서매월 약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로 산출 가능함
- 대기업(1,000인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비율

- (적절성)해당지표는신중년의품격있고활기찬일·사회참여세부추진전략을직접적으 로 반영하는 산출 지표로서 적절함.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추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여 건 마련과 관련된 소위 추진화경 조성 측면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고 판단됨.
- (명확성 및측정가능성) 2020년 5월 도입된 50세 이상의 정년 또는 이직 예정자에게 제 공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하기업의 비율을 의미. 근로자수1.000명 이상의 기업 수대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로 고용노동부 자료로 산출 가능함.

○ 신중년의 지속적 여가활동 비율

- (적절성)상기지표는신중년의사회참여측면의양적/질적측면을측정하는동시에,이 들의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근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명확성및측정가능성)신중년(50~69세)의휴식활동을제외하여가활동중일/주/월/ 년단위로지속적(정기적)으로참여하는여가활동)비율로매년수행되는국민여가활동 조사를 통해 산출 가능함.

○ 신중년의 여가생활 만족도

- (적절성) 상기 지표는 특히 신중년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근거로 서 의미가 있는 지표이자, 관련 성과를 직,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지표 로 이해됨.
- (명확성및측정가능성)신중년(50~69세)의전반적인여가생활만족도(약간만족+만족 +매우 만족)로 매년 수행되는 국민여가활동조사를 통해 산출 가능함.

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영역의 핵심성과지표(안)은 다음과 같음.

<표 5-15>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영역의 핵심성과지표(안)

ĺ	핵심성과지표(안)
	- 한부모가족의 차별 경험률
	- 다문화가족의 차별 경험률
	- 노인층과 젊은층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 국가균형발전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 건강보험 재정수지율

- 국민연금 수급률

자료: 저자 작성.

○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의 차별 경험률

- (적절성)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인구구조변화에대한적응영역의핵심과제로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을제시하였고, '다양한가족의삶이존중받고차별받지않도록차별금지·예방을실효성있게보장하는'법적기반마련을추진과제로제시함. 따라서해당지표는다양한가족에대한차별을금지하고수용성을제고를위한정책추진의성과를평가하는결과지표로서 적절함. 다만, 상기지표는주관적응답을바탕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 객관적인자료를바탕으로한지표가보완적으로개발될필요가있다고 판단됨.
- (명확성및측정가능성)(한부모가족의차별경험률)다양한가족에대한수용도혹은편 견정도를 측정할수있는지표로전체한부모가족응답자중부당한일이나차별을받은 경험(차별을받은편이다+심한차별을받았다)이 있는비율을의미함.3년을주기로수 집,구축되는한부모가족실태조사자료를활용하여산출가능함;(다문화가족의차별경 험률)결혼이민자및귀화자와다문화가정자녀중(결혼이민자·귀화자의경우)외국출 신이라는이유로차별을경험했거나(다문화가정자녀의경우)다문화가정의자녀라는 이유로차별이나무시당한경험이있는결혼이민자귀화자와다문화가정자녀의비율을 의미하며3년을 주기로 수집, 구축되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 산출 가능함

○ 노인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 정도에 대한 인식

- (적절성)인구고령화가심화되고고령/초고령인구비율이점차많아질것으로예상됨에 따라 보다 유연한 연령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연령에 따른 차별 및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될 필요가 있는 바, 상기 지표는 연령통합적 사회를 보다내실 있게 준비하는 데필요한 개별 구성원의 가치관을 집계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대응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근거 자료로서도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지 표로 판단됨.
- (명확성 및측정가능성) 우리사회의 노인층과젊은층 간의 갈등에 대한인식 점수(1: 전혀심하지 않다~4: 매우심하다)의 평균 점수로 2013년 이후 매년실시되는사회통합실 태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가능함.

○ 국민연금 수급률

- (적절성)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인구구조변화에대한적응영역의핵심과제인'전국민사회안전망강화'의 세부과제로'국민연금가입확대'가제시되어있음.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정책 중 하나로. 정부가추진하고 있는 주요사회안전망관련 제도 중대표적 제도임. 특히국민연금수급자수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것은 상기 국민연금제도의 실효성을 측정함과 동시에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방향을 가늠하는 근거 자료로서 의미가 있음. 이러한 점에서 국민연금 수급률은 전국민사회안전망 강화의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명확성및측정가능성)전체인구대비국민연금수급자수로국민연금공단전산시스템 (NPiS)을 통해 산출 가능함.

○ 국가균형발전지표 핵심지표 평균의 표준편차

- (적절성)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지역상생기반구축세부전략을제시함으로서 지역 인구 변화에 따른 지역 인구 위기,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견지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방향은 현재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을 극복하기위한 지역간 격차 완화 및 상생으로의 전환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판단됨. 지역상생기반구축의 기본적 바탕은 지역간 인구 및사회경제적 여건 격차 완화라는 점을 고려할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균형발전지표(핵심지표)평균의시도간표준편차는 이러한 격차 변화를 통해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진단하는 근거로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상생기반구축의 성과평가관련 핵심성과지표로서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명확성및측정가능성)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2019년부터수집,구축하고있는균형 발전지표(핵심·객관지표와주관지표)중핵심지표(인구부문:연평균인구증감율,경제:재 정자립도3개년 평균) 평균의표준편차를 산출하여표준편차 변화에 따라 지역 상생 및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의 개선 및 악화 정도를 측정함.
- ※ 상기 지표의 측정 방법과 관련하여 핵심·객관지표, 주관지표를 모두 아우르는 별도의 종합(총괄)지표가 없기 때문에 객관/주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어 핵심지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시함.

○ GDP 대비 국가채무/재정수지 비율

- (적절성)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고령친화사회로의도약영역에서'인 구구조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자원 운용 효율화 방안 마런'이라는 추진 방향을 제 시하고 있음. 고령친화사회는 인구 고령화사회, 보다자세하게논의하면 인구고령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를 의미하는 바, 이러한 정책 방향은 재정의 안정성과 지 속가능성이 필수적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음. 상기 지표들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 책의지속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재정의 안정성 및지속가능성을 간명하게 측정할수 있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함.
- (명확성및측정가능성)(GDP대비국가채무비중)국가채무는(국채잔고+차입금잔고 +국고채부담행위+지방정부채무)-지방정부의대중앙정부채무로서GDP대비비율로

기획재정부,「국가채무」,한국은행,「국민계정」을활용하여산출가능함;(GDP대비재 정수지비중)재정건전성은관리대상수지를기준으로판단하므로관리재정수지(사회보 장성기금수지 및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의 GDP 비율 산출.기획재정부(한국통합재정수지)가 매년 발표하는 수치를 활용하여 제시할 수 있음

○ 건강보험 재정수지율

- (적절성)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고령친화사회로의도약영역에서'국 민연금,건강보험등사회보험의지속가능성제고'를추진방향을제시하고 있음.건강보 험제도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제도 중 하나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인구의 진료비 비중이 급격하게 현재의 상황을 상기할때,고령화사회에서 중요성이 매우 높은 제도로 서해석됨.이러한측면에서고령친화사회로의도약수준을 포함하여제도의지속가능성 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기 지표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명확성및측정가능성)건강보험급여비와관리운영비등비용을보험료와정부지원금 등을합한건강보험수익으로나눈비율로연도별건강보험통계를통해산출가능함. 상 기지표는건강보험총수입에 대한총지출의 비율로지출이수입보다 큰경우 보험료 수입을포함한정부지원을제고할필요성을시사하며, 반대의경우보장률제고등의정 책 방향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마. 3대 목표별 활용가능한 (종합)핵심성과지표

- 추가적으로 3대목표중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대응 사회 혁신에 대하여 활용 가능한 (종합)핵심성과지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¹³⁾
- 해당지표는OECD(2020)에서 제시한삶의질(Better life) 지표의일부를인용하였으며, OECD 다른 국가와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함. 아울러 해당 지표는 OECD에서 격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어 지속적인 국가 간 비교 및 추적, 관리가 가능함.
- 먼저,개인의삶의질향상과관련하여,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인용하여 활용해 볼 수 있음.
 - 삶의만족도(Life satisfaction)는0-10까지의리커트형척도변수의평균수치임.이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조사결과를 바탕으로하고 있음.OECD(2020)에 따르면, 2010년 이후우리나라는(국가간비교가가능한특정시점에서)삶의만족도평균이6.1점으로 OECD 평균인 7.4점에 비하여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¹³⁾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목표를 아우르는 종합적 성격의 지표는 보다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함.

- 다만,OECD(2020)는사회통합실태조사의조사대상연령이19-69세로모든전국민을아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국가 간 비교가 어려운 한계를 언급하고 있음.
- 성평등하고공정한 사회와 관련하여, 국가성평등지수를 인용하여 활용해 볼 수 있음.
 - 해당지표는 국가와시·도별성평등수준을 파악하여 성평등관점에서 정책추진방향을 수립하고, 분야별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국가와지역의성평등 정도를 조사하여발표하는데, 구체적으로성평등한사회참여, 여성의인권·복지, 성평등의식·문 화 등 3개 영역, 경제활동·복지·가족 등 8개 분야로 구성되며, '완전한 성평등 상태'는 100점으로 산정됨. 참고로 해당 지수는 2015년 70.5에서 2019년 73.6으로 지속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여성가족부, 2021).
- 인구변화대응사회혁신과 관련하여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지표를 제안함.
 - 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의인구구조변화에 대한적응영역의 핵심과제로 '전국민사회안전망강화'를 제시하였음. 현재그리고 향후 전망되는 인구구조변화는사회적 위험과 동시에복지수요를 더욱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가능성이 높음. 이러한인구구조변화에보다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에서사회안전망을 강화할필요가 있는 바,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제시될수 있는 것은 현재의 공공사회복지지출수준임. 즉, 현재의수준을 바탕으로 인구구조변화에 보다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지출규모 변화를 전망하는 동시에, OECD를 중심으로 한국제 비교가가능하기 때문에 인구구조변화가 유사한다른 국가의수준과의 비교를통해 정책 방향을가능할수 있음. 이러한점에서 사회안전망 강화수준을 진단하는 목적에서의 핵심성과지표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은가구나개인이복지에불리한환경에 처해있는동안공적제도에 의한사회적급여나재정적지원을말하며, 지출항목은노인, 유족, 근로무능력관련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로 분류됨. OECD에서는격년으로자료를 요구(2년치자료)하고 있으며, 각회원국이 제출 한 자료를 검토하여 OECD에서 격년으로 공표하고 있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를 통해 추출 가능함.

3. 소결: 추가 고려사항

□ 상기핵심성과지표(안)은앞에서제시한지표개발의원칙에따라각4개의추진전략과의연관 성을 고려하여 제시되어 있음. 다만, 하기 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음.

- □ 향후실효성제고를위해제시된다수의핵심성과지표(안)을전문가또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양적으로 간소화하고 대표성 있는 지표를 선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13개핵심성과지표와비교해서양적으로많아지표관리에 있어서실익이적으므로,핵심성과지표를선별하여핵심성과지표수를줄이는 방향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보다포괄적이면서상대적으로대표성이부각되는핵심성과지표를선별하는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추가적으로,삶의질제고로전환된패러다임에좀더부합하는핵심성과지표를구성하고이를 산출하기위해서는지표의융합및적절한조사데이터의구축을통한새로운지표의개발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강은나, 이소영, 오신휘, 기재량. (2015).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 연구워.
- 교육부. (2021.9.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1」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525&board_cd=IND X_001에서 2022.4.29. 인출.
- 국가지표체계. K indicator. http://www.index.go.kr/unify/main.do?pop=%27y%27에서 2022.3.1. 인출.
- 국민일보. (2020. 12. 31.). [여의도 포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2023&code=11171316에서 2022. 2. 9. 인출.
- 김영록.(2013).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성과지표 적합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우림(2021).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김은정, 이상림, 강은나, 김대중, 김종훈, 박종서, ...이지혜. (201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7년 모니터링.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한민국정부. (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 대한민국정부.(2021a).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대한민국정부.(2021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 박종서, 이윤경, 김은지 외.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마련 지원 연구. 세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종서. (2022). 2022년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303, 73-86.
- 여성가족부.(2021).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 전년보다 0.5점 오른 73.6점 2019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523에서 2022.4.29. 인출.
- 이삼식, 이지혜, 김세진. (2014).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워.
- 이소영, 백혜연, 변수정, 장인수. (2018).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서울: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인구정책연구실. (2020).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전망과 정책적 함의. 세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인수, 정찬우, 이소영, 이도훈, 김세진. (2021). 2020년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서울: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제18580호 (2021)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70호 (2021)
- 정재호, 송창용, 남재욱, 정지운. (2021). 인재정책의 주요 이슈와 추진 방향. THE HRD REVIEW, 24(4), 10 -35.

-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20. 12. 17.). [긴급좌담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진단과 평가.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52490에서 2022. 2. 9. 인출.
- 최정아.(2014). 보건복지 정보화 성과계획 현황 및 개선방향, 보건복지포럼. 2014, 01, N207, 98-109.
- 통계청.(2021a).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출생,사망,혼인,이혼).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에서2022.1.10. 인출.
- 통계청. (2021b). 주요 인구지표(성비,인구성장률,인구구조,부양비 등) / 전국.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에서2022.1.1 0. 인출.
- 통계청. (2021c). 사망자수, 조사망률, 기대수명.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에서 2022.1.10. 인출.
- 통계청. (2022a).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I2에서 2022.1.10. 인출.
- 통계청. (2022b).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101&tblId=DT_1B040M5에서 2022.1.10. 인출.
- 통계청. (2022c). 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 blId=DT_1B26001에서 2022.1.10. 인출.
- 통계청. (2022d). 성/종사상지위별 취업자.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 T_1DA7028S에서 2022.4.7. 인출.
- Bogue, L. Robert. (2005). *Use S.M.A.R.T goals to launch management by objectives plan*. TechRe public.
- Doran, G. T. (1981). There's S.M.A.R.T way to write management goals and objectives. *Manage ment Review. 70*(11). pp. 35-36.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main.do?cate=1에서 2022.3.1. 인출.
- NABIS. 균형발전지표. https://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에서 2022.3.1. 인출.
- OECD. (2019). *The OECD SOCX Manual 2019 Edition*. A guide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p. 16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social/soc/SOCX_Manuel_2019.pd f, 2021.10.1.
- OECD. (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OECD Better Life Initiative. Retrieved fr om https://www.oecd.org/wise/how-s-life-23089679.htm. 2022. 3.2.